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맹신협

좌담회 :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이슈 다시 꿈꾸고 싶은 청년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연대,
'청년연대은행(준)'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 보게 되리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구속 사건의 쟁점과 진실

한글서체
한글서체

2012년 12월호(통권 9호)부터 생협평론 구독방법이 바뀝니다.

1회 구독료: 3,000원

1년 구독료: 10,000원

구입은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홈페이지의 장보기메뉴 또는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에서 가능합니다.

〈생협평론〉 편집위원회

생협평론 2012 겨울 (9호)

펴낸이	이정주
펴낸곳	(재)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편집위원	김아영 이선옥 이성선 정설경
편집위원장	염찬희
편집디자인	이경원 (스튜디오 보싸)
펴낸날	2012년 12월 20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향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2호
전 화	02) 2060-1373 / 4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협평론 2012 겨울 (9호)

길잡이

협동조합시대, 자금 조달이라는 걸림돌	염찬희 (편집위원장)	4
----------------------	-------------	---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7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조혜경 ((사)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6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정원각 ((가)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28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당신협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42
좌담회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기노채, 김대훈, 민영, 조항숙, 김아영	56

이슈

다시 꿈꾸고 싶은 청년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연대, '청년연대은행(준)'	조금득 (청년연대은행 추진위원장)	73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 보게 되리라	김남주 (변호사)	84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95
르뽀 아직, 거기 그들이 있다	이혜정 (기록노동자)	96
돌발논문 구미 불산 가스 유출사태, 무엇이 문제고 얼마나 심각한가?	김수민 (구미시의회의의원/ 아이쿱 구미생협 조합원)	107
서평 『화폐전쟁』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117
협동조합소식 코퍼라티브 유나이티드 (The Co-operative United) 참가기	이주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121

2012 윤리적 소비 공모전 수기부문 당선작

억척 짚순이의 '윤리적' 소비 입문기	김소연	126
아름다움을 구매하는 작은 방법	최선인	130
윤리적 소비 체험 수기	김서희	139

협동조합시대, 자금 조달이라는 걸림돌

염찬희 (편집위원장)

한국에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다섯 사람 이상이 뜻을 합치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바야흐로 이 땅에서 협동조합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보게 한다.

유럽에서 열렸던 협동조합 관련 학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점심시간에 우연히 북구의 활동가 한 사람과 나란히 앉게 되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녀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협동조합인으로서 최근의 고민이 무엇이라고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 전부터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자신의 국가는 법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기에 법적 요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설립 자금이 모아지지 않아서 힘들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런 어려움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친절하게 덧붙여 설명 해주었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소수의 참여자가 하나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그 참여자들이 부담하기에는 설립 자금이 적지 않은 액수라는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자금 조달은 한국의 협동조합들에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가장 큰 과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상상은 사회적 자금이나 공적 자금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에 가서 닿는다.

자금 조달의 문제, 이것이 협동조합을 새로 만드는 일을 저어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현장 협동조합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어찌 어찌 자금을 모아서 일단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그 다음에는 별 탈 없이 자금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가?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은 신용협동조합이나 보험협동조합 설립을 금지시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찍이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린 유럽과 북미에서 금융협동조합은 비금융협동조합과 나란히

성장해왔고, 금융협동조합은 비금융협동조합의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자금 중개기관으로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조혜경의 요약(“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은, 한국에서 협동조합을 한다는 것이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나는 한국의 협동조합 진영이 앞으로 해야 할 숙제 중의 하나는 바로 금융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협평론> 9호는 한국의 생협 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 중에서 자금 조달 문제에 주목한다. 생협이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사업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만 한다. 조합원에게 물류를 공급하는 기본적인 사업을 위한 자금 외에도,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유익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물류 공급을 위한 자금이야 조합원들로부터 조달받지만,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조합원들한테 모은 자금에서 얻은 수익으로 조달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류 공급 과정에서 가능하면 수익을 크게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조합원들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수익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충돌을 중재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이다.

그래서 이번 <생협평론> 9호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금융협동조합이라는 해외의 대안에도 눈을 돌려보았고, 김수행, 조혜경, 장종익, 정원각 네 분으로부터 자본, 자금 조달, 금융과 협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이 담긴 특집 원고들을 받았다. 협동조합진영은 이 귀중한 원고들로부터 한국의 상황에서 어떤 금융협동조합 모델이 실천에 적합한지 귀뜸을 받고, 동시에 협동조합기본법을 금융협동조합을 진흥시키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생협 연합회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 협동조합과 '자본'
-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맹신협

좌담회 :

-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협동조합과 '자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협동조합은 새로운 사회의 구성요소

‘새로운 사회’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사상가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 지금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새로운 사회의 ‘태아’를 잉태하고 있으며, 이 태아가 자라서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이룰 것이다. 물론 이 태아가 자라서 출산이 가까워질 때, 사회혁명의 ‘주체’는 출산의 ‘진통’을 단축시키거나 경감하고 모체에게 힘을 주어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새로운 사회의 ‘태아’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인 ‘사적 소유’를 잠재적으로 부정해야 할 것인데,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는 새로운 사회의 대표적 태아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을 들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의 자본 규모로는 경영할 수 없는 거대한 중화학공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의 건설을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하여 사회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자본’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리하여 주식회사의 자본은 ‘사적’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되며, 주식회사 자체는 ‘개인’ 회사가 아니라 ‘사회’의 회사가 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주식회사는 대주주의 이윤 추구에 봉사하고 있지만, ‘사회’의 회사이기 때문에 사회 모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잠재적으로는’ 새로운 사회의 기업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주식회사는 ‘자본가계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함으로써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 새로운 사회의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주식회사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자본가계급은 ‘주주’로서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월급쟁이 전문경영인이 노동자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주주들이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매년 회사의 이윤을 배당으로 받아가는 ‘무위도식자’가 되어 버리므로, 이런 주주들이 없더라도 주식회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자본가계급의 불필요성이 증명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고급 노동자인 월급쟁이 전문경영인과 일반 노동자들이 공장의 주인이 되어 더욱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공장을 운영하여 주민 모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자본가계급이 없으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이제 자본가들인 주주들은 일반 노동자가 되어 이들과 더불어 기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주식회사보다는 협동조합이 새로운 사회에 더욱 적합한 태아라고 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공장에서는 처음부터 모두가 노동자이므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대립이 없으며, 따라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장시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자본주의적 제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1864년 9월 28일 <국제노동자협회>(이른바 제1인터내셔널)가 창립되었을 때, 이 협회의 <창립선언>에서 영국과 유럽대륙에서 전개되고 있는 협동조합 운동, 특히 협동조합 공장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했다고 말하면서 협동조합 운동을 크게 찬양했다. 협동조합 운동은 ‘현대과학의 지휘에 따라 대규모로 운영되는 생산은 노동자계급을 고용하는 자본가계급이 없더라도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공장과 기계 등 ‘노동수단이 생산물을 낳기 위해서는 자본가가 노동수단을 독점하여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끝으로 ‘임금노동은 노예노동이나 농노노동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이고 저급한 형태의 노동에 불과하며, 자발적 손과 임기응변적 정신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연합한 노동(associated labour) 앞에서 사라질 운명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돈으로 건설한 협동조합에서는 자본가

가 없지만 생산이 능률적으로 잘 수행된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모든 사업장에서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본가들을 내쫓아버리더라도 사업의 경영에는 아무런 곤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자본가가 없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본가들이 사라지면 과연 의식주 생활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데, 협동조합은 분명히 “자본가들이 없어지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사라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활은 훨씬 더 나아진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더욱이 마르크스가 협동조합을 찬양하는 과정에서 “임금노동은 노예노동이나 농노노동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이고 저급한 형태의 노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점은, 자본주의 공장에서 행해지는 노동과 협동조합에서 행해지는 노동을 비교한 결과이다. 자본주의 공장에서는 자본가계급이 기계와 원료 및 생활수단까지 독차지하고 있으며, 임금노동자계급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자기의 육체적·정신적 힘인 노동력을 자본가계급에게 팔아 임금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임금노동자계급은 ‘임금노예’이다.(지금과 같은 세계대공황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찾지 못한 노동자들이 빈곤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여 자살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의 이런 딱한 사정을 이용하여 노동자가 하루 동안 노동하여 창조한 가치 중 일부만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진 잉여가치를 자기의 이윤으로 취득함으로써 자기의 ‘자본’을 증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가의 배를 부르게 하지 않으면 임금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공장이나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더욱이 노동자가 힘껏 일하더라도 모든 성과는 자본가가 독차지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하기를 꺼려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노동의 소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은 ‘하지 않아도 좋다면 하고 싶지 않은 노동’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협동조합에서는 노동자들 모두가 공장의 주인이고 자기를 위해 노동하기 때문에 ‘자발적 손과 임기응변적 정신과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부지런히’ 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노동자계급이 노동수단과 생활수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사라지고, 노동자계급이 노동수단과 생활수단을 자기의 것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서는 노동자들은 노동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노동을 ‘희생’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며, 노동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회를 지탱하고 발달시킬 노동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다. ‘능력에 따라 노동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서는 노동하는 개인들의 의무이고 윤리이다. 아무리 자기의 노동생산성이 높다하더라도,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로만 일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 노동해야,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 병자 · 실업자 등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에서는 자본가계급이 사라지고, 노동하는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동으로 공장과 기계와 원료 및 생활수단을 소유하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하는 개인들과 기타의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의 인적 ·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협동조합은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가 잉태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의 태아임에 틀림없다.

협동조합은 지금의 세계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

2007년 이래의 세계대공황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지고 있다. 사기와 약탈의 방법으로 저소득층에게 대출한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근거로 발행된 모기지 관련 증권의 가격이, 저소득층이 모기지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자 폭락함으로써 현재의 세계대공황이 시작된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공적 자금’(즉 세금)으로 금융회사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해 금융제도의

붕괴를 막긴 했지만, 정부의 ‘국채’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값싼 자금으로 석유·곡물·금 등에 투기하여 상당한 이윤을 얻었지만, 정부의 재정적자는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과 세출 증가로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재정적자가 큰 국가들에게는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자금공급을 축소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에는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및 국제통화기금이라는 트로이카가 그리스의 국채를 보유한 국제금융회사들을 대신해 이들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개시했다. 즉,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에게 긴축내핍정책을 강요하여 그리스 정부가 재정흑자를 낸다는 조건 아래에서 일정한 금액의 구제금융을 제공하여 이 자금으로 채권금융회사에게 채무를 갚게 하는 것이다.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에게 제공하는 구제금융은 그리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그리스 채권금융회사에게 채무를 갚는 것에만 사용하는 자금이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긴축내핍정책으로 경기가 더욱 나빠져서 실업자와 빈민이 크게 증가하고 GDP는 몇 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긴축내핍정책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는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유럽의 모든 노동자와 서민이 공동으로 파업을 통해 긴축내핍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줌도 안 되는 ‘기생적’ 금융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치적 동조세력이 긴축내핍정책을 강요함으로써, 유럽의 온갖 인적·물적 자원의 완전한 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유럽의 모든 시민을 마치 노예처럼 수탈하여 이들의 집단적 창조성을 억압하거나 낭비하고 있다. 세계대공황이 야기한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체제를 변혁해야 할 충분한 이유와 기회를 제공한다. 유럽의 모든 시민이 단결하고 연합하여 거대한 금융회사와 산업기업을 모든 노동자와 시민이 소유하는 ‘협동조합’ 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시켜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금융회사와 산업기업이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게 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이 사용하는 돈은 ‘자본’이 아니다

자본(capital)은 노동자를 착취하여 이윤을 얻는데 사용되는 돈이다. 나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친구들과 막걸리를 사먹는데 지출되기 때문에 자본이 아니다. 그러나 자본가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에 사용되어 더 많은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본이다. 자본이 인간의 탈을 쓰고 나타난 것이 자본가이므로, 재벌의 총수가 자본가일 뿐 아니라 국영기업을 영리적으로 운영한 소련의 정부와 관료도 자본가였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를 ‘흡혈귀’에 비유하였다. 이리하여 자본가는 살아있는 노동자의 피를 빨아야만 살 수 있고, 많은 피를 빨수록 더욱 더 원기가 왕성해진다고 묘사했다. 낮은 임금으로 긴 시간 동안 일을 시키며 과로로 말미암아 생기는 질병에는 보상하기를 거부하는 자본가가 더욱 큰 이윤을 얻어 대자본가로 성장하는 것을 생각하면, ‘자본가 = 흡혈귀’ 공식은 자본가의 본질을 가장 잘 지적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자본가가 아니다.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공한 돈은 노동하는 조합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자본’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이다. 협동조합 공장에서도 조합원은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개개인이 노동력을 상품으로 협동조합에 파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조합원 개개인의 노동력을 협동조합 전체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미리 합의한 결과이다. 물론 협동조합의 운영 상태에 따라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조합원 모두에 의해 민주적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에서도 분업이 실시되어 각 조합원이 다른 업무를 맡을 것이지만, 이 직무의 차이는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가장 평등한 직무 순환은 추첨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유연한 분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각자의 능력이 ‘전면적으로’ 발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합 자체에서 교육과 훈련을 계속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 운동은 국민의 자금으로

협동조합 운동은 자본주의의 노자투쟁을 제거하면서 모든 조합원들, 나아가서 주민 모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 사이의 경쟁에 의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독점적 대기업은 새로운 기계와 생산방법을 도입하여 노동자를 해고시키며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하청 중소기업을 수탈하며, 독점가격을 통해 상품 가격을 인상하고, 이리하여 보통 사람인 민중의 삶을 불행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의 전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운동이 전국 규모로 발전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협동조합이 개별 노동자들의 일시적 노력이라는 협소한 범위에 머문다면 민중의 불행을 크게 축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협동조합 운동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발행하여 각계 각층의 여유자금을 모집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모든 주주들이 협동조합원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노동자는 모두 주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주식 발행으로 얼마나 큰 자금이 모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이렇게 되면 협동조합원이 아니면서 협동조합의 이익을 배당으로 나누어 가지는 ‘무위도식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로, 협동조합 운동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독점적 대기업의 횡포를 저지하고 민중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지출하여 협동조합 운동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지원은 노동자 집단에게 협동조합을 건설하는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이 자금을 이용해 생산 활동이나 매매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지원은 파산위기에 처한 금융회사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이나 평상시의 ‘산업지원’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이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시민들은 협동

조합의 확대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업자가 많아야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노동자들의 착취가 더욱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협동조합 운동가들과 기득권층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협동조합 운동가들도 국가권력을 장악해야만 협동조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가 본 협동조합

끝으로, 마르크스가 1866년 8월 국제노동자협회 제1차 대회(제네바)에 참석하는 임시일반평의회 대의원에게 보낸 <지시>에서, 협동조합 운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글을 마친다.

1) 우리는 협동조합 운동이 계급적대에 의거한 현재의 사회를 변혁할 세력들의 하나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 운동의 큰 장점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이라는, 궁핍을 일으키는 현재의 독재적 시스템을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이라는 공화주의적이고 복지창조적 시스템에 의해 지양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2) 그러나 협동조합제도가 개별 임금노예들의 개인적 노력에 의해 추진될 정도로 영세한 형태에 제한된다면, 이 제도는 결코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 생산을 자유롭고 협동조합적인 노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조화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들’, ‘사회의 전반적 조건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사회의 조직된 힘, 즉 국가권력을 자본가와 지주로부터 생산자들 자신에게 이전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다.

3)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협동조합 상점’보다는 ‘협동조합적 생산’에 종사

할 것을 권고한다. 전자는 현재의 경제시스템의 표면을 손덜 뿐이지만, 후자는 그 토대를 공격한다.

4) 우리는 모든 협동조합에게, 실례와 교훈에 의해 자기의 원리를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교육과 설득에 의해 새로운 협동조합 공장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기의 공동수입의 일부로 기금을 만들 것을 권고한다.

5) 협동조합이 보통의 중간계급의 주식회사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된 모든 노동자는, 주주이건 아니건, 동등한 주식 몫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오직 일시적 방편으로 주주에게 낮은 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것이다.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조혜경 ((사)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여 동안의 시행령 준비과정을 거쳐 2012년 12월 1일 발효된다. 앞으로는 5명 이상이 모이면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협동조합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개별법 체제의 구속에서 벗어나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의 다양한 실험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 전체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기본법이 협동조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뜨겁다. 더구나 협동조합이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한 경제민주화와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 가장 걸맞은 기업형태와 기업경영방식이라는 점에서 기본법 시행이 협동조합의 외연 확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기본법 제정으로 과거 협동조합 설립을 제약했던 개별법 체제에 내재한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기존 8개 개별법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바탕에 깔려있다. 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못을 박았다. 기본법이 이렇다 할 저항이나 반대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던 것은 아마도 이 조항 때문일 것이다. 농수산업, 금융업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이미 존재하는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금융업과 관련해서는 과거 개별법의 영토를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겨 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지 기본법에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아예 금지사항으로 지정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기본법에 의거해 신용협동조합이나 보험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둘째, 기존의 생협이나 기본

법에 의거해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경우 자금조달의 문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미해결과제로 남게 되었다. 기본법 제정이 한국의 협동조합 진영이 이루어낸 큰 성과이자 진전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결국 반쪽짜리 법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일찍이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린 유럽과 북미에서 금융협동조합은 비금융협동조합과 나란히 성장해왔으며 협동조합 운동과 협동조합 경제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 금융협동조합이 비금융협동조합의 자금수요를 충족하는 자금중개기관으로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회사와 구별되는 대안적 소유지배구조의 금융회사로서 금융협동조합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¹ 유럽의 협동조합 운동이 탄생시점부터 금융과 경제사업의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과는 달리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진영은 이유야 어쨌든 스스로를 비금융 산업분야로 한정해 한길 노선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에게 자금은 혈액과도 같은 것이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건강한 기업이라도 자금을 제때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흑자도산을 하는 수도 있다. 협동조합도 기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을 설립하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쉽고 저렴하게 조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국내 협동조합 진영이 풀어야 할 어렵고도 큰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유럽의 경험에서 이미 입증되었듯이 협동조합 경제생태계에는 반드시 금융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동조합 경제를 지탱하는 자금공급 역할

1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협동조합은행은 구시대적인 지배소유구조, 수익보다는 안전을 추구하는 지루한 은행(boring banks)이라는 낙인과 함께 비웃음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기 이후 유럽의 협동조합은행은 새로운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협동조합이 금융업 자체의 속성과 일치하는 소유지배구조 형태이기 때문이다. 금융업은 보통의 기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금융회사도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주가 주인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돈이 없으면 금융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형태의 소유구조에서 금융회사가 예금자 혹은 투자자의 돈을 가지고 대출이나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 수익이 나면, 금융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그 수익을 챙겨간다. 예금자와 투자자가 자신의 돈을 금융회사에게 믿고 맡겼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 금융회사의 수익은 예금자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업의 속성상 예금자와 주인을 나눌 이유가 굳이 없다. 예금자의 돈으로 번 금융회사의 수익을 주주가 먼저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주인을 따로 두지 않는,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소유구조와 경영방식이 금융업에 최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기업경영은 금융업의 생명인 위험관리 측면에서도 주식회사 형태보다 훨씬 우월하다. 협동조합은 조직 원리상 내부통제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의 금융협동조합이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늘 큰 간극이 있기 마련이고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을 저버린 금융협동조합은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회사와 별 차이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의 논의 현황

개별 협동조합의 성장, 더 나아가 협동조합 진영 전체의 확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숙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한 문제는 아직 국내에서 논의가 부족하다. 협동조합 진영 내부의 문제 제기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을 개

정해 금융업을 허용해야 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금융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의 시각도 많다. 금융업은 본질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불리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고, 금융업에 손을 대는 순간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농협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돈의 자기증식을 우선하는 금융업 자체가 사람을 중심에 두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충돌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신용질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협동조합이야말로 금융업의 최적의 기업형태라는 사실과 함께 외부자금 없이 기업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엄연한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협동조합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금융협동조합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방법론에 대한 문제는 한국 협동조합 진영이 공동으로 해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거기까지 아직 갈 길이 한참 멀다. 협동조합 진영 내부에서 아직 금융업에 대한 공감대조차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협동조합 진영 내부에서 돈과 관련된 논의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것인지의 문제로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관제 협동조합의 역사가 긴 한국 사회에서 정부자금이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논의가 순서가 바뀌었다. 정부가 주겠다는 돈을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그 이전에 협동조합 진영이 제 발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의 힘으로 협동조합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금융의 토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협동조합 진영 내부에서 먼저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낸 다음에 정부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다.

한국 금융법제의 특징과 신용협동조합 법제

협동조합 진영에 걸맞은 금융은 어떤 형태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금융법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금융업은 이용자의 돈이 소위 사업의 ‘밑천’이기 때문에 국가의 허가가 없이는 금융업을 할 수 없고, 이용자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가 있다. 만약 협동조합기본법이 금융업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금융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별도의 법제가 필요하고, 국내에는 이미 신용협동조합 법제가 존재한다.

현재 국내 협동조합 법제가 허용하고 있는 금융업은 두 가지 조직형태로 구분된다. 첫째는 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협동기구가 있다.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새마을금고(이하 금고)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이하 수협)과 산림협동조합(이하 산림조합)의 신용사업이다. 경제사업과 금융업을 병행하는 농협과 수협은 국내 협동조합 환경에서 예외적인 금산복합 협동조합이자, 국내 은행법의 근간인 금산분리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농협과 수협의 신용사업은 이중 체계를 가지고 있다. 농·수협중앙회와 시도 지부가 운영하는 금융사업체는 각각의 특별법에 규정된 특수법인의 지위, 즉 특수은행으로 분류되어 일반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예금보호공사의 보호 대상에 속한다. 반면 농·수협 지역조합, 즉 단위조합의 신용사업은 신용협동기구로 분류되어 신협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국내 신용협동기구의 법제에서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다음의 두 가지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농수협이 아닌 협동조합은 금융업을 병행할 수 없다. 특별법을 통해 예외를 인정한 농수협을 제외하면 금산복합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새로 금융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신협법이나 금고법을 따라야 한다. 즉, 금고 아니면 신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그에 따라 각각의 중앙회 지붕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 금고와 신협만을 허용하는 개별법 체제의 멍에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개별법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영업을 침범하지 않는 기본법이 나란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금융정책의 장벽: 신규 시장진입 금지

앞에서 제기한 질문으로 되돌아가보자. 협동조합 경제의 성장에 필수적인 금융형태를 모색하는데 현재의 여건에서 실현가능한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금융업은 정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데,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신규설립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은행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성격과 상관없이 한국의 금융정책은 신규 진입을 금지해 경쟁을 제한하는 한편,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국의 금융경쟁력이 뒤처지는 이유를 소규모의 금융회사들이 난립하는데서 찾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원인 진단에서 소수의 대형 금융복합그룹이 지배하는 금융생태계를 만들어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나온 것이다.

은행의 신규 시장진입 금지 방침은 신용협동기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2003년에 신설된 2개의 금고를 포함해 2009년까지 총 8개의 금고가 신규 설립되었다. 신협은 금고보다 훨씬 뒤늦은 2006년부터 신규진출이 허용되었는데 2006년 2개사(삼일회계법인, 동원그룹), 2007년 1개사(롯데마트), 2008년 2개사(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총 5개 신협이 신설되었다. 지난 5년 간 신규설립 허가를 받은 신협은 모두 직장조합이다. 신협의 설립 인가권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소규모 서민금융기관의 난립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직장신협의 신규설립을 허용한 배경에는 우선 공동유대의 기준이 직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조합과의 과당 경쟁의 부작용과 위험이 적다는 것, 그리고 파산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조합과는 달리 직장조합의 경우 연체율이 낮고 수익성이 높아 신협의 대외이미지와 공신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몇 년간 소수의 조합이 시장 진출에 성공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용협동기구 업계 내부에서도 소규모 행정단위가 공동유대의 기준이 되는 영세 지역조합의 난립과 그에 따른 출혈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 신규 설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에 따라 감독당국과 금고·신협 중앙회가 공동으로 소규모 조합의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를 목표로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당국의 강제가 가능한 부실조합 정리 이외에 통폐합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²

조합 통폐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000년대 들어 금고의 신규진입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권을 행사하고, 금융당국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설립인가가 금고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설립인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2009년 이미 4개의 새마을금고가 자리 잡고 있는 대전 유성지역에 신규 금고설립 움직임이 진행되자 지역 4개 금고 이사장들이 유성구청에 신규설립 인가 거부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었고, 2011년 초에는 청주시에서 지역금고 설립인가 신청이 거부된 경우가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더 이상의 신규 금고 인가를 내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시에 제출했고, 청주시는 중앙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신규금고가 설립될 경우 과열경쟁으로 기존 금고가 부실해져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청주시의 불허 사유였다. 금고 설립인가가 거부되자 신청인은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내 새마을금고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신규 금고 설립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며, 금고 설립 제한 사유는 정관의 내용 또는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

2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10년 구조조정 목표를 105개소로 설정했으나 목표 달성율은 50.5%인 53개소에 머물렀다. 2011년에도 53개소에 대한 구조조정 목표를 세웠으나, 8월 31일 현재까지 45.3%의 구조조정만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 법원 판결의 요지다.

조합이든 일반은행이든 정부가 신규 설립을 가로막고 신용협동기구 업계 스스로도 신규조합 설립을 거부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그 제약을 뛰어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국 현실정치의 몫이다. 현실정치와 금융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의 문제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 주제이므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 정체성을 잃어버린 국내 신용협동기구

국내의 신용협동기구인 신협이나 금고³의 현실을 잠깐 들여다보자. 국내의 신용협동기구인 금고와 신협의 현실은 법제에 명시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원칙과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관제조합의 역사적 유산과 함께 온갖 불법과 사기, 부실경영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경영행태 측면에서 일반 금융기업과 큰 차이가 없어 본래 설립취지와 목적은 현실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국내 신용협동기구의 문제점은 법제의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를 무시한 경영행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더구나 1997/8년 외환위기 이후 누적된 금융정책 실패와 금융규제 완화의 폐해가 신용협동기구의 정체성 상실에 큰 몫을 담당해왔다. 돈벌이에만 집중하고 있는 신용협동기구와 이를 부추기는 정부정책이 서로 맞물려 협동조합과는 거리가 더욱 멀어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2008년 9월 초 신협중앙회와 하나금융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신협중앙회가 하나금융과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펀드, 파생상품과 같은 수익증권의 공동판매 채널을 구축하고, 이 창구를 통해 하나금융

3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설립 및 운영, 사업내용 등 법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상호저축은행과 기타 상호금융기관(농·수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과 더불어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서민금융지원 시책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 상품을 우선 판매한다는 내용과, 카드업을 비롯해 헤지펀드와 파생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대규모 투자에도 공동 참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더 이상 지역과 서민을 기반으로 한 틈새시장에 머물지 않고 2009년 2월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신탁의 규모를 키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단위조합 통합을 통한 대형화 추세와 더불어 수익증권 투자업무 확대는 2000년대 들어 나타난 신탁협동기구의 새로운 변화에 해당한다. 여유자금 운용에서 수익증권 투자가 허용되어 조합원을 위한 자금 중개기능보다 자본시장 진출을 통해 ‘돈벌이’에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금고와 신탁의 자금조달 및 운영현황을 보면 신탁협동기구의 자금중개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고의 자금구성에서 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말 88.1%를 기록하고 있다. 자금운영 측면을 보면 총 자산에서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49.5%에 불과하며 현금과 예치금 23.1%, 유가증권 22.5% 순이다. 현금 및 예치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유가증권 비중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예대율은⁴ 56.2%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조합원에게 받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대출자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재무적 용도의 자금운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금고중앙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금고중앙회의 자금 조성 구성을 보면 예탁금이 70.3%, 상환준비금이 23.3%로 단위조합의 예탁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금 운용에서는 유가증권 투자가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금 비중은 9.3%에 불과했다. 신탁의 경우 2010년 자금 조달에서 예수금 비중은 87.7%, 자산 구성에서는 대출자산 57.6%, 현금 및 예치금 27.2%, 유가증권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대율은 65.8%에 불과하다. 새마을금고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낮은 예대율은

4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의 비율. 은행 경영이나 국민 경제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네이버 국어사전, 편집자 주)

예수금으로 조성된 사업자금의 상당부분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돈 놀이'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종합금융그룹을 미래 비전으로 내세운 신탁이 최근 들어 조합원 자격요건이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를 풀어달라며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농협이 조합원이 아니라 비조합원 위주로 신용사업 덩치를 키워나갔던 것처럼 신탁도 농협의 뒤를 쫓아가겠다는 것이다.⁵ 비조합원의 이용에 제한이 없어지면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존 신용협동기구와의 연대 가능성

금고와 신탁이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협동조합 경제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금융모델을 찾는 작업은 더욱 요원한 과제가 된다. 그 과제를 실현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안은 현존하는 금융협동조합과의 연대와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금융협동조합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정치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기존 금융협동조합의 전략적 연대가 유일한 현실적 대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전제는 금고와 신탁이 스스로 협동조합 경제의 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금융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라보고 '돈벌이' 자체를 추구하고 있는 금고와 신탁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금고와 신탁만을 허용하는 금융협동조합의 개별법 체제에서 특혜를 누리면서도 종합금융그룹으로 변신하는데 제약이 되는 금융협동조합 법제를 벗어나고 싶은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정책과 정부시책에 흔들리는 관제협동조합의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종합금융그룹을 꿈꾸며 협동조합 진영의 자금공급 역할을

5 2000년대 들어 금융당국은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협동기구의 비조합원 사업이용을 허용하고 사업범위를 은행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왔다. 조합원 가입자격 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수신영역에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제한을 폐지한 것은 신용협동기구의 외형 성장을 가능하게 했으나 동시에 무리한 자산 확대의 결과 부실위험이 높아지고 신용협동기구의 본래적 의미와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기존의 금융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진영이 지향을 공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설사 개별 단위조합 차원에서 협동조합 간 연대와 제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개별법 체제의 보호를 받는 금융협동조합과 관제 협동조합 외곽에 위치한 협동조합 진영이 서로 엮이지 못한다면 개별조합 차원의 선택에 의존하는 연대는 큰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금융협동조합을 개별법 체제의 구속에서 해방시키는 방법: 금융협동조합법 제정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은 개별법 체제의 구속을 없애 금융협동조합의 진영을 새로 꾸리는 일이다. 개별법 체제의 신용협동기구 법제를 깨트리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는 담을 수 없는 금융업에 대한 별도의 규제와 근거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즉, 금고법과 신탁법을 하나로 묶어 금융협동조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방식의 금융회사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금융협동조합법이 아니면, 금융협동조합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 다양한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이 자유로워지고,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 3곳이 모이면 자신의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소수의 금융협동조합이 모여 자율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기존의 신탁법과 금고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신탁과 금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다양한 금융협동조합 및 그 연합체 가운데 하나가 된다.

신탁법, 금고법을 통폐합한 금융협동조합법을 제정하는 것은 협동조합 진영에 필요한 금융모델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실현하는 길이다. 협동조합 진영이 협동조합 경제의 자금공급 역할을 담당할 금융협동조합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면 금융협동조합법 제정을 요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난 8월 말 국회에서 열린 ‘협동조합을 통한 서민금융 대안 찾기’ 토론회에 참여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으로 협동조합의 유용

성이 입증된다면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신용협동기구의 개별법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해 금융업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협동조합기본법으로는 금융업을 규율하지 못한다. 금융업은 소유지배구조와 그 유형에 상관없이 별도의 법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장기적인 전망을 갖는다면 금융협동조합법 제정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신탁과 금고의 부실 위험에 경고등이 켜져 있다. 신탁과 금고의 덩치 키우기를 사전에 막지 못하면 이미 존립위기에 처한 저축은행업계의 운명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금융권에 지배적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신탁과 금고가 전력투구해온 위험한 외형 키우기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신탁과 금고를 포함한 제2금융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신탁의 개혁방향이 논의된바 있다. 안타깝게도 금융협동조합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서민금융의 실천 주체라는 정부시책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용협동기구를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의 대행기관으로 이해하는 정치권의 접근은 위험하다. 서민금융기관은 정부시책을 집행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에 불과하고 금융협동조합을 서민금융기관으로 몰아가는 것도 정부의 작품이다. 정부의 논리에 빠져들면 제2, 제3의 관제협동조합만 양산될 뿐이다.

협동조합 경제생태계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협동조합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은 금융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협동조합 경제를 키우는 동반자여야 한다.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을 준비하는 일은 협동조합 진영 내부의 연대와 공동의 정치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협동조합 진영이 힘을 모아 기본법 시대를 개척해냈던 것처럼 말이다. 향후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의 동반자로서 금융협동조합에 논의가 공론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정원각 ((가)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1. 들어가면서

아이쿱생협은 한국의 생협 진영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잘 걷는 조직으로 유명하다. 십 수 년 전부터 물류센터 화재 복구, 비수도권 지역의 물류센터 건립, 우리 밀 사업, 공정무역, 북한 돕기, 정신대 할머니 돕기 사업, 지역 생협 매장 건립, 생산자 선수금 사업, 우리밀 라면 공장 건립 등등 여러 사업으로 조합원들에게 돈을 걷어왔기 때문이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모금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해왔다. 그래서 그런지 조합원 증가와 사업 성장이 가장 빠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고 평가 받는다.

협동조합은 사업체이자 결사체다. 사람이 중심이면서도 돈(자금)의 결합이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즉, 협동조합에서 자금(또는 출자금, 자본)¹은 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원(또는 사람) 다음으로 필요한 요소다. 단순히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기 위해 돈을 일시적으로 모아서 공급하는 방식이나, 국가나 자치단체와 같은 외부 조직이 제공한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자금이 꼭 필요하다. 한편 협동조합은 자본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조직으로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하였고 탈퇴할 때에는 출자금을 돌려주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다음은 자금 또는 출자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자금이 가지는 성격, 역할 그리고 자금 조달의 방식 등을 정리해 보았다.

1 자금, 출자금, 자본은 엄격히 말하면 서로 다르다. 자금은 필요한 금액 전체를 말하고 출자금은 조합원이 가입을 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돈이다. 즉, 자금에는 출자금, 조합원 채권, 내부 유보금, 외부 은행 차입 등 모두가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큰 의미로 자금으로 사용하고 때에 따라 출자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1-1. 로치데일과 영국의 위기

1844년 12월 21일 28명의 조합원으로 로치데일공정선구조합이 출발하였다. 사업이 잘되었는데 주변 자본가들의 방해로 큰 위기를 겪는다. 그 위기는 바로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빼내 가는 것이었다. 자본가들이 로치데일이 곧 망한다는 헛소문을 내자 불안해진 조합원들이 자신의 출자금 1파운드를 돌려받기 위해 줄줄이 탈퇴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 1파운드는 1,800원이지만 당시에는 노동자 한 명이 2주일 동안 일했을 때 받는 금액으로 꽤 큰 액수였다. 이와 비슷한 소동이 1969년 영국 BBC의 보도로 또 일어났다. 밀롬협동조합의 문제점이 방송되자 불안해진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에 투명한 자금을 인출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2. 독일 도르트문트생협의 파산

1998년 96년의 전통을 가진 독일의 도르트문트-카셀생협은 파산했다. 조합원 50만 명, 슈퍼마켓 350개, 백화점 16개, 직원 15,000명, 매출 250억 마르크였다. 많은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이렇게 규모가 크고 역사가 깊은 협동조합이 파산을 한 이유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의 오류를 지적한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자와 조합원에게 주식 배당과 같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은 조합원을 소극적인 주주 또는 평범한 고객으로 만들기 때문에 조합과 상호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결국 조합원들은 일반 주식회사와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 협동조합이라는 생각이 사라졌다.

1-3. 일본 삿보로생협의 위기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삿보로 시에 있는 생협들은 파산의 위기 속에서 일생협연합회의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핵심 요인은 그 동안 홋카이도에서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던 생협이 일본의 거대 유통자본이 들어와서 경쟁을 하다 수지가 악화 되고, 실무 책임자들이

분식 회계를 통해 이를 감추다가 누적되자 채권자들에 의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외부 은행과의 거래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원에게 구하지 않고 외부에서 동원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협동조합 특성상 은행에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1.4. 미국 합판노동자협동조합의 주식회사 전환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수십 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던 합판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주식회사로 매각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 과정 속에서 노동자들은 처음 출자했던 출자금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사업을 청산할 때, 잔여 재산을 조합원이 출자한 비율로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정관, 법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비롯하여 유형, 무형의 자산이 생기고 그 자산은 초기보다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초기 출자한 금액을 빼고 나면 자산이 남게 된다. 유럽은 대부분의 경우 남은 자산을 다른 협동조합이나 정부에 환원하는데 미국, 일본, 한국에서는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눠주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합판노동자들은 남은 자산을 주식의 가치로 받게 된 것이다.

위의 사례들은 협동조합에서 출자금과 자금이 갖는 특성과 역사적 경험 그리고 각 나라의 제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점검해 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이 가지는 성격

앞에서 이야기했듯 협동조합에서 자금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인데 그 중에서도 출자금이 가지는 성격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출자금의 성격을 알아야 그 성격에 맞게 출자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자금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2-1. 출자금은 협동조합의 정의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

1995년 ICA 100주년을 기념하는 총회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체성을 선언하였는데 그 내용은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로 시작한다. 여기서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생산수단이다. 물론 상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나, 서비스나 금융을 제공하는 협동조합이나, 또는 공동 구매 협동조합이나에 따라 생산수단은 다르다. 하지만 어떤 협동조합인가와 관계없이 생산수단을 조합원 스스로 가져야 하는데 그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인 출자금이다. 즉, 출자금은 협동조합을 정의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다.

2-2. 인적구성체인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협동조합은 결사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결사체와 다른 점은 바로 출자금이다. 일반적으로 결사체는 참여하는 사람의 의지를 구두 또는 문서로 확인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가입에 대한 자발적 의지 표현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납부하는 출자금을 내야 조합원이 된다. 즉, 다른 결사체에서는 출자금이 없거나 회원이 된 후의 의무(회비 납부)로 주어지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은 회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이다. 이는 다른 NGO와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2-3. 사람의 결합을 강화해 주는 매개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주식회사의 주식 대금과는 다르게 사람의 결합을 강화해 주는 매개물이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대금은 초기 주식을 구입한 사람이 그 주식회사와 관계가 없어지더라도 주식회사에 남아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출자금을 낸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떠나게 되면 같이 빠져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관계, 결합을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4.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

주식회사와 같은 자본 기업에서 자본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즉, 초기 투자한 자본보다 더 큰 자본이 되는 이윤 증대, 추구가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윤 추구를 위해서 사람인 노동자는 채용되기도 하고 해고되기도 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은 사람인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다. 그래서 출자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하인인 것이다.

2.5. 부의 집중을 막고 골고루 분배하는 성격

자본 기업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수 자본가가 소유하여 거기서 생산된 부를 다시 자본이 가져가게 되므로 부가 집중되고 독점된다. 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 모두가 출자를 골고루 함으로써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부도 함께 나누게 된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부는 자본 기업과 달리 많은 사람에게 배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출자금의 역할

3-1. 경제적인 역할

먼저 출자금은 생산한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한다. 자본 기업에서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와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대부분이 자본가에게 집중된다. 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을 낸 조합원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한 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쌓이게 된다. 다음으로는 조합원들은 경영과 사업의 결과가 출자금(자금)의 축소 또는 소멸에 영향을 주므로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소비자가 대상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 임노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자금의 최소, 최대 금액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의무와 협동조합에 대한 1인의 경제적 지배력 독점을 견제한다.

3.2. 정치적인 역할

첫 번째, 협동조합에서는 출자 규모(소유 규모)와 의사 결정권이 분리됨으로 인해 1인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주식회사는 투자 규모와 의사 결정권이 비례하여 민주주의 원칙 유지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민주주의의 기본인 권리와 의무를 알고 훈련하게 한다. 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을 출자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이 시작되므로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다.

3.3. 사회적인 역할

먼저 출자금은 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하지만 많은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과제 해결력으로 인해 공공적 성격을 가진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 제3섹터 영역을 강화시킨다. 다음으로 출자금은 자발성, 자유의지에 의해 내는 것이므로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앞당긴다. 마지막으로 출자금은 지역 사회의 물리적 자본(건물, 병원, 학교, 상하수도 등)과 경제적 자본을 강화시킨다.

4.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자금 조달의 어려움

4.1. 불안정한 출자금-언제든지 빠져나가는 한계

협동조합의 출자금이 가지는 한계 중 가장 큰 것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로 인해 자금의 안정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 협동조합에 참여한 가난한 조합원들의 생계를 배려해서 언제든지 환급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제든지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사소한 소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사업에서 자금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4.2. 은행 거래의 불리함

출자금의 환급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과 거래에서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계통의 금융계에서도 출자금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대출 이자가 비싸고 담보물을 제시해도 일반기업의 경우보다 낮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협동조합 금융은 다르다. 프랑스에서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출자금의 50%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4.3. 조합원 대상 상호부조 성격의 저금과 대출도 금지

유럽의 소비자협동조합 매장을 잘 관찰해 보면 작은 창구에서 조합원들이 예금하고 대출을 받는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유럽에서는 생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간단한 금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협의 금융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참여도 실질적으로는 막혀 있다. 2010년 생협법 개정으로 공제 사업 정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4.4. 내부 유보금을 통한 자금 조성의 어려움

앞에서 기술한 로치데일공정선구조합은 꾸준한 사업의 성과와 내부 유보로 1864년에는 자본금 62,105파운드, 조합원 4,747명이 되며 1880년에는 조합원 10,613명, 자본금 292,570파운드를 갖게 된다. 이는 사업을 통해 얻어진 잉여가 내부 유보로 쌓인 것으로 봐야 한다. 이와 같이 유럽의 경우 오랜 역사 속에서 내부 유보를 통해 자금을 조성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짧은 역사와 내부 유보에 대해 유럽보다 과세를 많이 하는 등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내부 유보금을 통한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

5. 필요한 자금 규모와 환경의 변화

5-1. 유통자본과 경쟁

초기 영국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이 만들어질 때에는 노동자 조합원들이 특정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몇 가지 생필품을 갖춘 매장 형태의 단순 중계 업무였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큰 규모의 출자금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유통 자본이 규모화 되고 고도로 발달한 시점에서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5-2. 한국 농업의 현실과 규모

한국 생협이 다루는 물품의 성격은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한국은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생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농산물의 개방으로 인해 한국 농업은 지금 몰락하고 있다. 그나마 농업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농민 생산자가 1차 농산물 생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공과 유통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협이 소비자협동조합으로서 공동 구매에만 머무를 수 없이 가공과 유통을 해야 하는 역할이 있으므로 그에 맞는 규모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5-3. 생협의 역할에 따른 자금 규모

자금의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이에 대한 답은 ‘생협, 협동조합이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생협의 역할을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역할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한국 친환경 농업의 성장과 확대를 목표로 할 것이냐?’, 또는 ‘유럽의 생협과 같이 대형 유통자본과 경쟁을 하여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까지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자금 규모가 다르다.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자금 규모는 유통자본과 경쟁하는 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보다 적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협, 협동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 규모는 그 조직이 꿈꾸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6. 협동조합에 자금 조달의 방법과 한계 그리고 대안²

현대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자본기업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동조합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기자본과 외부에서 차입한 타인자본(부채)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는 협동조합의 다양한 자본 조달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6-1.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자금 조달 방식

6-1-1. 자기자본

협동조합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통적인 방법 조합원의 직접 출자, 배당금의 내부 유보, 공동자본 등이다.

6-1-1-1. 조합원의 직접 출자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하는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1좌당 금액을 적정하게 정한다. 협동조합에 따라서 누구나 가입을 쉽게 하기 위해 1좌 금액을 아주 적게 하는 방식도 있고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조합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1좌 금액을 높게 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조합원의 출자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출자를 많이 한 조합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출자 금액과 의결권은 분리되어 있지만 ‘가입과 탈퇴의 자유’로 인해 출자 규모가 큰 조합원이 탈퇴하면 협동조합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 농협중앙회 편, 『협동조합론』, 2005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일부 보완함.

다. 셋째,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을 제한하는데 그 이유는 협동조합의 출자금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과 같은 성격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다.

6-1-1-2. 배당금의 내부유보(Retained Patronage Refunds)

배당금의 내부유보란 협동조합이 사업을 하여 발생한 순이익 가운데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할당은 하되 지급하지 않고 협동조합이 보유하여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대신 조합원에게는 할당한 만큼의 출자증권이 제공된다. 몬드라곤의 노동자협동조합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몬드라곤에서는 노동자조합원들에게 사업의 성과를 배당하되 현금으로 주지 않고 다시 출자금으로 넣게 한다. 대신 그 금액의 이자만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6-1-1-3. 공동자본(unallocated equity)의 형성

공동자본은 비분할자본(非分割資本) 또는 불분할자본(不分割資本)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는 협동조합의 순이익 중 조합원에게 배당되지 않고 협동조합 내부에 축적되는 자본을 말한다. 이는 조합원이 직접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 아닌 경우에 주로 발생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합원 전체가 합의하여 새로운 사업을 위해 공동자본으로 결의하기도 한다. 생협에서는 적립금이 공동자본의 역할을 한다.

6-1-2. 타인 자본

협동조합의 전통적인 자본 조달에서 타인 자본은 예수금과 차입금을 들 수 있다. 예수금은 조합원한테 받은 예금이다. 그리고 차입금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의 형태로 빌려오는 부채 성격의 자금이다. 이 차입금에는 조합원에게 빌려오는 내부 차입금과 비조합원에게 빌려오는 외부 차입금이 있다. 한편 협동조합은 일반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는데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의 기업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 출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차입을 할 수 있는 자금 규모나 이자율에서 불리

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한편 협동조합은 외부의 지배를 받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외부 차입금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

6-2.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식의 한계

주식회사는 발행한 주식에 주는 자기 자본의 안정성을 통해 많은 차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 배당을 무기로 새로운 증자를 이용해 자본을 원활히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 그것을 정리해보자.

6-2-1. 자본조달 원천의 제한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을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자유롭게 조달하고 있는 반면, 협동조합은 이용자인 조합원이 조합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조합원을 통한 자본조달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을 확대하거나 조합원당 출자액을 늘려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지만, 조합원은 투자에 비례한 의사결정권과 자본이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조합원 이상으로 투자하려는 동기를 갖지 못한다.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으며, 일반투자자로부터의 자금조달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6-2-2. 이익의 내부유보 한계

협동조합도 경쟁이 심화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을 축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적립금으로 유보하여 공동재산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이익의 내부유보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합원은 미래의 이익을 위한 공동재산의 확대보다는 당장 이익을 현금으로 배당해 주길 바라고 있으며, 경영진은 조합원의 이탈을 우려하여 배당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6-2-3. 무임승차의 문제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기 때문에 재산권이 명확히 분할되지 않아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출자금 이 적거나 조합원의 가입이 자유로운 생협 등에서 자주 발생하게 된다. 즉, 이용자들이 자원을 이용한 만큼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익창출에 기여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도록 재산권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내부 무임승차자(조합원 무임승차) 문제와 외부 무임승차자(비조합원 무임승차)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국 생협은 비조합원 이용 금지가 되어 있으므로 내부 무임승차자 문제만 다루면 다음과 같다.

내부 무임승차자 문제는 신규 조합원들이 기존 조합원들과 같은 금액으로 가입을 하거나 똑같이 이용액 배당을 하는 것, 그리고 파산 시 잔여 재산을 얻게 되는 문제다. 이를 막기 위해 유럽의 많은 협동조합들은 출자금만 돌려주고 잔여 재산은 다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6-3. 새로운 대안

이러한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 중의 하나는 협동조합이 자회사로 주식회사를 두는 방법이다. 물론 51% 이상 또는 100%를 협동조합이 소유하여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추가 출자 또는 외부 투자와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는 조합원 내부에서 동원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조합원에게 추가로 출자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조합원에게 출자에 대한 인센티브(투자 이익)를 제공하여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자배당 강화, 지분의 재평가, 보너스지분(Bonus Share) 제공, 지분거래 허용 등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위해 우선주(의결권은 없이 최우선 배당), 투자자 참여증권(의결권과 배당이 주어지는 증권 일종의 투자 조합원) 등의 발행이다.

7. 마무리

아이쿱생협은 지금까지 새로운 사업을 할 때에 조합원들이 적극 나서서 증자하고 내부 차입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다. 지역 7개의 물류센터, 8개의 배송 센터와 지역 생협이 운영하는 약 100개의 매장이 그런 경우다. 더구나 2009년에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증자 운동을 통해 약 14억 원을 모을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약 3천 명의 휴면 조합원이 탈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금만 모은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과 조합의 상호성이 강화되었고 조합을 이용하는 진성 조합원만 남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기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 배추 값 파동 때 배추 값을 안정시키는 큰 위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수매선수금이라는 자금 동원 운동을 하고 있다. 종자를 구입하고 씨를 뿌릴 때부터 은행 빚 또는 사채를 빌려야 하는 농민 생산자들에게 아이쿱생협이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기 위한 것이다. 이 수매선수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200년 역사인 유럽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쉽지 않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떻게 상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이다.

자본기업에서는 자본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므로 돈이 주인이고 사람이 하인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사람이 먼저 모이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자금을 모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고 돈이 하인의 역할을 해 왔다. 한편 그 돈은 주인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는 인간을 지배하는 돈이 되지 않고 활력을 주는 돈이 된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에서 자금은 단순히 돈에 머물지 않는다. 조합과 조합원,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사업과 활동을 연결시켜주는 핏줄이자 상호 신뢰의 열매이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관련 제도 비교

구 분		협동조합	주식회사
통제 (control)	투표권	• 조합원: 투자자이며 이용자	• 일반주주: 투자자
	자격	• 조합원 자격기준: 가입자유	• 주식소유자
	투표권	• 1인1표의 민주적 관리 • 다수의 공평한 지배	• 주식 수에 비례 • 소수에 의한 지배
	경영	•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 이사회가 선발한 최고경영자	• 주주에 의해 선출된 이사회 • 이사회가 선발한 최고경영자
소유권 (owner- ship)	소유자	• 조합원 • 조합원의 소유한도 제한	• 주주 • 개인의 소유제한이 없음
	최소의 소유자격	• 자격제한: 가입비, 최소출자, 이용액에 비례한 출자 등	• 자격제한 없음
	소유권 이전	• 극히 제한적임(2차 시장이 없음)	• 지분거래 가능 (2차 시장)
	출자상환	• 상환책임 있음	• 상환책임 없음
수익 및 배당 (benefit)	처분원칙	• 이용액 배당	• 주주에 대한 투자수익 제공
	출자배당	• 법적 제한 • 일부 미 실시	• 투자에 비례하여 실시 • 제한 없음
	이용액 배당	• 협동조합의 독특한 특성 • 법적 규정, 매우 일반적임	• 거의 없음
	공동지분	• 제한적 허용 (비조합원 사업수익) • 상대적으로 적음	• 매우 광범위하게 허용 • 수익을 공동지분과 배당으로 분할
기타	차입 규모	차입에 대한 제한으로 어려움	차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음
	파산시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차입과 배당에는 제한이 없고 책임은 유한책임으로 많은 문제 발생시킴. 차입에 대해 제한하고 책임 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음

* 출처: 협동조합론 2005년판(농협중앙회 편)

* 기타는 필자가 별도로 정리하여 추가함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당신협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각 분야에서 고루 발전해온 퀘벡주 협동조합

인구 8백만 명의 캐나다 퀘벡주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잘 발전되어 있고, 북미에서는 처음으로 1997년에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을 도입한 지역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발전과 혁신에 크게 기여한 조직이 바로 데잘당 신협이다. 우선 퀘벡 협동조합의 현황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퀘벡주의 협동조합은 2009년 말 현재, 모두 3,200개가 있으며,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수는 752만1천 명에 달한다.(<표 1> 참조) 협동조합에 종사하는 직원의 수는 79,222명이며, 데잘당연합회의 추정에 따르면, 퀘벡주의 GDP 중에서 협동조합의 비중은 최소 약 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의 비중은 약 4%에 달한다.

<표 1> 퀘벡 협동조합 현황 (2009년)

분류	데잘당신협	상호보험회사	비금융 협동조합	합계
조합수(개)	671	39	2,500	3,210
조합원수 / 보험가입자수(천명)	5,162	1,410	950	7,521
직원(명)	37,320	3,902	38,000	79,222
매출액 (백만 달러)	6,937	1,985	7,000	15,922
자산총액 (백만 달러)	85,343	4,597	4,000	93,940

(출처: Conseil de la coopération du Québec)

협동조합은 금융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발전해왔다. 공동구매 소비자협동조합, 농업 및 임업생산협동조합 등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연대협동조합 등이 분포되어 있다.(<표 2> 참조)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발전해왔다.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 식료품의 유통, 운송, 의료 보건 및 사회서비스, 학교의 매점과 서점, 전문 및 기술 서비스 분야, 제조업 분야, 장례와 레크리에이션 분야 등에서 협동조합이 발전해왔다. (<표 3> 참조)

<표 2> 비금융 협동조합의 종류별 현황: 조합 수 기준 (2008년)

분류	조합수	비중(%)
소비자협동조합	1,514	65.3
생산자협동조합	295	12.7
연대협동조합	253	10.9
노동자협동조합	183	8.0
종업원지주제기업	54	2.3
기타	19	0.8

(출처: Ministère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 l'Innovation et de l'Exportation, Perspective: Economic Analysis Review, Vol. 21 Desjardins Economic Studies, 2011.)

<표 3> 비금융 협동조합의 산업분야별 현황: 직원 수 기준 (2008년)

분류	직원수(명)	비중(%)
농업과 식품가공업	21,945	50.0
임업	4,213	9.6
의료 보건 및 사회서비스	4,170	9.5
식료품	3,204	7.3
학교	2,326	5.3
전문 및 기술 서비스	1,843	4.2
제조업	1,536	3.5
운송	1,535	3.5
장례	1,534	3.5
레크리에이션	1,404	3.2
기타	176	0.4
합계	43,891	100.0

(출처: Ministère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 l'Innovation et de l'Exportation, Perspective: Economic Analysis Review, Vol. 21 Desjardins Economic Studies, 2011.)

퀘벡 협동조합의 중추, 데잘당신협

캐나다 신협의 뿌리는 20세기 초반에 퀘벡주에서 알폰세 데잘당이 주도한 인민금고(caisses populaires)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운동은 정부의 법적 지원과 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지난 100년 동안 퀘벡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붙어권 지역인 퀘벡주, 온타리오주 외에 매니토바와 뉴브런즈윅 주에서는 인민금고 이름 하의 신협들이 강한 조직적 결합을 형성하여 2009년 말 현재 481개 신협, 조합원 수 5백80만 명, 1천2백억 달러의 자산규모, 42,200명의 직원 규모로 발전했다. 퀘벡 지역에서는 신협의 점포수가 일반은행의 점포보다 많으며, 신협은 지역 예수금의 3분의 1 이상, 소비자대출의 3분의 1, 상업대출의 4분의 1, 모든 농업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데잘당 신협그룹은 퀘벡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며, 북미에서 가장 큰 신용협동조합이다. 자기자본금은 112억 달러이고 자기자본 비율이 15.8%에 달하여 이는 캐나다의 일반 상업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2009년 말 데잘당 신협그룹에 AA-를, 무디스는 Aa1의 높은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다.

데잘당 신협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은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춰 조직 및 경영혁신을 꾸준히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캐나다 신협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영기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새로운 금융기술과 활동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합병을 통하여 캐나다 신협의 수는 1975년 4,117개에서 1991년에 2,664개, 2001년에 1,595개로 감소하였다. 데잘당신협그룹도 합병을 추진해왔다. 1996년에 1,205개였던 인민금고(단위 신협)가 합병을 통하여 2009년에 481개로 줄어들었으며, 1999년에는 11개의 지역연합회와 퀘벡주 총연합회를 통합하였다. 데잘당신협그룹은 경쟁의 격화로 인하여 영업마진이 감소하는 환경 속에서 이러한 조직통합을 기반으로 기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상비용을 감축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였다. 데잘당 신협연합회(Federation des caisses Desjardins du

Quebec)는 20개의 자회사를 운영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금고(Caisse Centrale)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연합회가 소유한 회사들은 보안, 플라스틱카드, 정보기술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회사들은 화재 및 재난보험, 생명보험, 건강보험, 신탁 및 투자관리, 기업금융서비스, 벤처캐피탈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캐나다 신탁은 일반은행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점을 폐쇄해온 소규모 농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왔다. 캐나다 재무성에 따르면, 2000년과 2001년에 브리티시 콜럼비아, 매니토바, 사스캐치완, 알버타, 뉴 브런스윅, 노바 스코시아 등 6개 주에서 몬트리올 은행과 같은 대형은행들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소재 72개의 지점을 철수하였는데, 신탁이 이들을 인수하였다. 농촌지역에 소재한 은행지점들은 그 지역에서 유일한 은행들이었는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상업은행들이 철수하고 신탁이 이를 인수하자 인구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신탁의 노력이 돋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캐나다 신탁의 조합원 수는 1975년에 520만 명에서 2001년에 1천8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자산규모도 확대되어왔다. 위의 두 가지는 선진국의 신탁활동에서 대체로 예상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퀘벡주 신탁이 특수한 점은 지역공동체에 1차적 초점을 맞추고 신탁의 윤리적 정체성을 발현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이다.¹

데잘댕신탁그룹의 지역개발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활동

데잘댕신탁그룹은 다음과 같은 미션을 설정하여 활동해오고 있다. “데잘댕신탁그룹은 사람들과 지역의 경제·사회적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i) 조합원들에 의하여 소유되고 관리되며, 통제되

1 캐나다신탁중앙회(CUCC)의 가장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98%의 신탁이 영업구역 내에 위치한 조직들에게 기부를 하고 후원자가 되어 주며, 71%가 근로 자원봉사를 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310만 달러를 기부했고, 750만 달러의 지역 자선기금을 모금했고, 기부금과 후원금으로 1,810만 달러를 냈다.(Ian MacPherson, 2011)

는 통합된 금융서비스협동조합 네트워크와 경쟁력 있는 수익성을 확보하는 보완적 조직들을 끊임없이 발전 시킨다; ii) 사람들, 특히 조합원과 임직원에게 민주주의, 경제, 연대, 그리고 개인 및 집단의 책임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미션 하에서 데잘맹신협그룹은 지역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퀘벡에서 소유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였다.

데잘맹 투자회사는 지역기업들의 파트너가 될 만한 외국자본을 찾고 있으며, 국제개발협회는 50여 개의 개발도상국에서 신협 설립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몬드라곤 카자노동은행처럼,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시스템이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데잘맹 신협그룹은 1900년대 설립 이후부터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² 지역의 모든 인민금고가 사회적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퀘벡주의 대부분의 비영리조직의 계정은 인민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인민금고들은 조합원 배당 외의 잉여금 일부를 사회적, 혹은 지역공동체 기금을 설립해왔다. 데잘맹 신협그룹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퀘벡주에는 소비자협동조합과 주택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연대협동조합이 발전해왔다.

퀘벡주는 전 지구적 차원의 세계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농촌의 과소화와 도시빈곤의 진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퀘벡주 정부와 민간단체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이슈를 논의하여 왔다. 첫째, 지역개발, 둘째, 마을의 공동화와 주민편의시설의 폐쇄 문제, 셋째, 보육활동의 사회화문제, 넷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의 문제(1993

2 이안 맥퍼슨(2011)도 이점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미국 신협운동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많은 영어권 캐나다신협 지도자들은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장려했다는 점이다. 사실, 이들은 신협을 협동조합운동의 ‘금융자회사(financial arm)’로 보았다. 신협이 일반적인 협동조합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았던 미국의 상황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년에 실질실업률은 22.8%(87만3천 명),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는 전체 인구의 10%인 80만 명에 달함), 다섯째, 노인을 위한 홈케어서비스의 문제 등이다.

퀘벡정부는 1996년에 ‘경제 및 사회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업주, 노동조합, 협동조합, 여성단체, 지방단체 등의 대표적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사회경제조직들(지역개발회사와 지역경제개발회사, 여성조직, 노동조합, 데잘당 협동조합, 퀘벡협동조합협의회 등)이 홈케어서비스를 중심 과제로 설정하고 협동조합법의 개정을 추진해서 1997년에 협동조합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 법은 2005년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에 따르면 연대협동조합은 이용자, 종업원, 후원자 조합원 중 2종류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개인은 한 종류 이상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캐나다 퀘벡에서 논의되어온 연대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유럽에서 추진되어온 사회적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i) 연대협동조합은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서 추진된다; ii) 연대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설립되고 운영된다; iii) 연대협동조합의 자본은 분할될 수 없고, 거래될 수 없으며, 해당지역 외로 빠져나갈 수 없다; iv) 연대협동조합이 활동하는 공간적 범위는 협동조합이 기반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v) 연대협동조합의 운영은 조합원들의 책임 하에 있으며, 1인1표의 원칙을 고수한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479개의 연대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이 중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 수는 2008년 현재 328개였다. 이 기간 동안에 설립된 협동조합 총수가 1,702개였음에 비추어 볼 때, 연대협동조합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연대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 레저, 개인서비스 또는 홈케어서비스 등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표 4> 참조) 연대협동조합은 퀘벡주 전역에 걸쳐 퍼져있지만, 준도시 및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몬트리올과 퀘벡시에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헬스케어서비스협동조합은 여러 지역의 의사 부족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2008년 현재 30여 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의사들을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퀘벡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부에 주요 통계가 보고된 145개 연대협동조합이 창출한 일자리는 2,124개이며, 조합원 수는 5만 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조달한 자본금은 16백만 달러이며, 매출액은 56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퀘벡주의 연대협동조합 중 대표적인 사례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표 4> 활동영역으로 구분한 연대협동조합

	부문	설립	활동 중
농림수산업	블루베리농장	2	2
	농업	18	10
	어업	3	1
	임업	9	6
제조 및 건설업	의류	4	0
	컴퓨팅	12	6
	건설	1	0
	주택	15	13
	제조	5	3
	인쇄 및 편집	11	8
유통, 운송, 교육, 레저, 문화, 의료, 사업, 사회서 비스 등 서비스업	운송	8	2
	청소 등	3	3
	숙박 및 음식 서비스	29	18
	예술 및 공방	4	3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33	21
	케이블 소매업	2	2
	상업	20	16
	교육	10	7
	학교 협동조합	2	0
	식료품점	24	13
	레저	60	45
	공동구매그룹	2	1
	재활용	15	9
	비즈니스 서비스	31	21
	개인 서비스	44	37
	사회 서비스	50	37
	기타 서비스	29	24

컨설팅 및 사회서비스	마을그룹	1	0
	컨설팅 서비스	9	7
	육아서비스센터	11	5
	경제 개발	12	6
합계		479	327

주: 2007년 7월 31일 현재

(출처: Direction des coopératives, MDEIE)

<표 5> 퀘벡 연대협동조합의 대표적 사례 요약

기업명 (설립연도)	위치, 인구, 소속 지역	취급 서비스 및 제품	조합원 수 (최소 가입출자금액)
Co-opérative de solidarité en aide domestique Domaine-du-Roy (1997)	St-Félicien, 10,622명, Lake St. John	-재택 돌봄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03년 현재 1,182명의 이용자조합원(\$10), 99명의 노동자조합원 (\$50), 18명의 후원조합원 (\$100)
Co-op de solidarité en soins et services de Saint-Camille (1999)	St-Camille, 440명, Eastern Township	-고립된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및 문화예술 서비스	'05년 현재 45명의 이용자 조합원(\$250), 2명의 노동자조합원 (\$250), 15명의 후원조합원 (\$250)
Co-opérative de solidarité récréotouristique du Mont Adstock (1998)	Adstock, 2,399명, Chaudière- Appalaches	-파산한 개인 소유 스키리조트의 협동조합적 운영	'03년 현재 405명의 이용 자조합원 중 371명은 레저 조합원(\$50)이며, 34명은 비즈니스조합원(5천달러 이상), 1명의 노동자조합 원(1천달러), 5명의 후원 조합원(1만달러)
Co-opérative de solidarité en alimentation sain L'Églantier du Kamouraska (1999)	Saint-Pascal, 3,643명, Lower St. Lawrence	-유기농식품가게, 커피숍, 서점 운영 -유기농텃밭 가꾸기 교육 등	2003년 현재 272명의 이 용자조합원(\$50), 6명의 노동자조합원(\$100), 12 명의 후원조합원 (\$100)

(자료: Girard, 2009)

퀘벡주의 연대협동조합이 캐나다의 다른 주에 비해 매우 발전해온 배경에는 정부의 지원체계 확립과 사회적 금융의 활성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우선 정부의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연대협동조합은 퀘벡주정부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어젠다의 한 부분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연대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의 설립과 성장을 돕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퀘벡주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력을 통하여 연대협동조합의 자금 조달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오고 있으며, 연대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퀘벡 정부는 지역공동체 기업을 포함하여 비영리기업을 위한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경제의 투자기관을 허용하는 법률을 마련하였다. 이 일환으로 새로운 펀딩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Investissement Québec은 협동조합적 기업가정신 프로그램(Collective Entrepreneurship Program)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본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Regime d'investissement cooperative는 노동자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노동자-투자자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협동조합들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투자할 경우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재무적 수단이다.

퀘벡은 집단적 기업, 면단위와 군단위 개발조직, 그리고 사회운동조직들을 결합시키는 비영리조직인 사회적 경제 회의소(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에 Réseau d'investissement social du Québec(RISQ)가 사회적 경제 회의소에 의해서 설립되었는데, RISQ는 협동조합적 기업에 대하여 신용대출, 대출보증 혹은 참여적 대출을 5만 달러까지 제공하고 추가로 5천 달러까지 소규모 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연대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을 위한 금융지원을 선도해온 데잘댕신협

연대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은 사회적 금융체제의 발전이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 데잘댕신협그룹은 이러한 사회적 금융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퀘벡의 사회적 경제부문의 비영리조직들은 기부, 기탁금, 정부보조, 프로그램펀딩, 채무보증, 자체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는 시장 활동을 통하여 사회·경제·환경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퀘벡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기관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금융기관을 매개로 새로운 주체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혁신적인 투자 상품과 기술적 지원이 고안되고 이행되었는데, 데잘댕신협이 이러한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적 경제 부문 내의 기업들은 수익률 극대화만을 목표로 투자처를 찾는 일반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금융기관(social finance institutions)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적 금융은 수익률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는데, 퀘벡주의 사회적 금융은 개발자본(Development Capital), 연대금융(Solidarity Finance), 정부금융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데잘댕신협그룹은 개발자본과 연대금융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개발자본은 벤처자본(unsecured equity or quasi-equity)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재무적 수익률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자본은 지역공동체 발전,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환경보호 등 사회적 투자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개발자본은 전통적 방식의 대출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대출이나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자본으로는 3개의 펀드가 있는데, 데잘댕신협이 주도하여 만든 Capital regional et cooperatif Desjardins(CRCD)이 포함되어 있다. CRCD는 2001년에 설립되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연간 2,500달러 한도 내에서 CRCD

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투자액의 50%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소득세 면제조건으로 투자지분은 최소한 7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CRCD는 이러한 투자활동을 통하여 자본, 전문가, 그리고 퀘벡 내의 기업체 및 협동조합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퀘벡주의 3대 개발자본(Development Capital)

기금명	Fonds de Solidarité	Fond Action	CRCD(데발탕신허)
기금 목적	전략적 투자를 통하여 노동자의 은퇴소득을 보호하고 퀘벡경제를 증진	노동자의 은퇴소득을 보호하고 퀘벡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퀘벡의 경제발전
총자산	73억 달러	6억36백만 달러	7억33백만 달러
자금 조달원	노동자의 투자, 민간의 투자	노동자들의 저축, 민간의 투자	민간의 투자
수요처/고객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의 기업	환경 친화적이고 노동자 경영참여형 사회적 기업과 소규모 기업	퀘벡주에 소재하는 협동조합 혹은 기업
자금 제공방식	보통주, 우선주, 지분소유, 참여형 대부, 보증대부, 무보증대부	보통주, 우선주, 대부, 무보증대부, 채무인수, 전환 혹은 비전환 회사채	보통주, 우선주, 전환 혹은 비전환 회사채, 무보증 대부, 준-지분 투자
자금 제공규모	기업당 5천-5만 달러이나 2백만 달러 한도 가능	10만-25만 달러와 50만-5백만 달러	20백만 달러 한도
총투자액	41억 달러	3억85백만 달러	4억70백만 달러
효과	126,135개의 일자리 창출	8천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3만 개의 일자리 창출
웹사이트	www.fondsftq.com	www.fondaction.com	capitalregional.com

(자료: Elson 외, 2009)

연대금융은 지역공동체의 경제개발과 사회적 기업들에 대하여 자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산업부문의 주체들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로 협동조합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을 담당한다. 퀘벡에는 4개의 연대금융기관이 있는데, 데잘당 신탁이 주도하여 만든 데잘당 연대경제기금(Caisse d'economie solidaire Desjardins)이 여기에 포함된다. 데잘당 연대경제기금은 1971년에 설립된 것으로 오랫동안 퀘벡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부문을 지원하는 유일한 금융기관이었다. 데잘당 연대경제기금은 주로 지역의 진흥과 사회적 주택의 설립을 추진하는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하였다.(<표 7> 참조) 이러한 민관 합동의 자금 지원 및 컨설팅 지원체제로 연대협동조합의 생존율은 다른 기업들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7> 퀘벡주의 3대 연대금융기금(Solidarity Finance Fund)

기금명	Caisse d'economie solidaire(데잘당신탁)	RQCC	RISQ
기금 목적	퀘벡에서의 사회적·연대 경제의 발전을 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제공	사회적 경제부문에의 자금 제공
총자산	4억22백만 달러	320만 달러	1,030백만 달러
자금조달원	노동조합	지역공동체, 비영리조직, 민간투자펀드, 정부 등	정부, 민간투자펀드
수요처/고객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지역공동체 대부서를 등	사회적 경제부문의 기업
자금제공방식	개인 혹은 기업대출	무보증대부	대부, 채무보증, 신용마진 보증, 비회원 지분 투자
자금제공규모	-	2만 달러	5만 달러 한도
투자건수	927 개 기업(2005년)	235명	180건의 투자, 188건의 기술지원(2005년)
총투자액	5억 달러('94-'04)	5백만 달러	830만 달러
효과	-	2,330 개의 일자리 창출 혹은 유지	4,412 개의 일자 창출 혹은 유지
웹사이트	caissesolidare.coop	rqcc.qc.ca	fonds-risq.qc.ca

(자료: Elson 외, 2009)

이외에도 데잘댕 금융협동조합은 데잘댕 금융보증기관(Desjardins Financial Security)을 통해 홈케어서비스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그 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데잘댕그룹은 또한 1975년에 Development International Desjardins(DID)를 설립하여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동유럽 20여 개 나라의 지역공동체 금융에 대해 투자와 기술적 지원을 수행해왔다. DID는 현재 7억5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세계은행, 캐나다국제개발청 등과 협력하여 저개발국의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퀘벡협동조합 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협동조합 인큐베이팅기능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퀘벡정부는 1984년에 협동조합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는 조직, CDR(Coopérative de développement régional)을 시민활동가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퀘벡 주는 17개 지자체로 되어 있는데 현재 11개의 CDR이 있으며, CDR의 연합회(Fédération des coopérative de développement régional)가 운영되고 있다. CDR은 ‘협동조합 모델 전파, 협동조합 설립 지원, 5개 분야 협동조합에 대한 제반 지원,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퀘벡 주정부의 경제개발부(투자국)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 조직은 협동조합방식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설립 시 정관 만들기부터 조직 운영,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국신협도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투자자의 역할을 시작해야

이상에서 소개한 캐나다 데잘댕신협의 지역 및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활동은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신협이나 한국신협 등이 주로 경제적 약자의 상호금융에 초점을 맞추어온 반면, 데잘댕신협은 이러한 역할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업의 금융지원기관 역할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라의 신탁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즈음하여 과거에 해온 가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금융제공기능에 더해, 다양한 협동조합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지역투자자의 역할을 개척해야할 것이다.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때/곳: 2012년 11월 13일(화) / 성공회대 미가엘관

참석: 기노채 (주택협동조합 준비위원회 대표위원)

김대훈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장)

민 앵 (살림의료생협 이사장)

조향숙 (아이쿱울산시민생협 이사장)

사회/정리: 김아영 (생협평론 편집위원)

사회: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심이 특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협동조합 운동 중 자본 조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살림의료생협)의 민앵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살림의료생협은 100%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생협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출자금만으로 생협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조합원의 출자금만으로 사업을 시작한 살림의료생협

민앵(살림의료생협 이하 민앵): 살림의료생협은 올 해 2월에 창립을 하고, 8월에 서울 은평구 구산역 사거리에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한 저희 생협을 좋게 봐주셔서 부담도 되고, 앞으로도 원칙을 지켜나가는 탄탄한 협동조합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살림의료생협은 2009년에 2명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조직 활동을 해 왔습니다. 창립 이전에 이미 12개의 소모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2011년에 은평구청과 민관협력사업으로 ‘마이닥터 클리닉’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반을 닦았습니다. 2월 창립 당시 자본 조달

목표 총액이 4억3천만 원 정도였고 그 절반이라도 모아 보자 그랬는데, 6주 동안 출자금 모금 모범사업을 진행해서 절반 조금 넘게 모았습니다. 출자는 기본 한 구좌가 만 원인데 약 600명 이상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출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천 명 정도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일단 의원만 개원하고 조합원들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만만치 않더라구요.(웃음) 앞으로 조합원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또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사회: 편안하게 말씀해주셨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웃음) 살림의료생협은 생협 사업 초기에 자본을 조달한 경우라면 아이쿱울산시민생협은 새로운 직영매장 사업을 위해 자본을 조달한 경우입니다. 현재 조합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매장 직영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원의 출자와 차입으로 새로운 직영매장 사업을 시작한 아이쿱울산시민생협

조향숙(아이쿱울산시민생협, 이하 조향숙): 아이쿱 울산 시민생협은 현재 규모가 30평, 54평, 100평인 직영 매장 사업을 하고 있고, 매장 주변에 조합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7년에 매장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 1년간은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와 사업연합회, 생산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주)쿵스 토어에 경영을 위탁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매장 직영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온라인 공급사업만 했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의 직영매장 사업을 위해 조합원의 출자나 차입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탁경영을 1년간 진행한 이후 지역조합이 직접 매장을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초기에 모았던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자금 조달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합원들이 800여 명 정도였고, 직영매장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본이 2억5천만 원이니, 조합원 한 명이 30만 원씩 참여하자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핸드폰 문자 안내와 꼼꼼한 전화 모니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한 구좌를 30만 원으로 하고 개인이 최대 3구좌 까지 출자하도록 유도하면서 안정적인 자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출자금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한 이후 나머지는 조합원에게 차입을 받았습니다. 이때 약 25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사업을 위한 자본 조달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장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후 조합원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로 매장 사업이 안정화 되면서 제2매장, 제3매장 사업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은 조합원들도 새로운 매장 직영 사업을 이해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차입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제1매장을 통해 마련한 내부유보금들이 바탕이 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조합원 차입금을 모두 갚았는데, 어떤 분들은 일정 정도 조합원의 차입금을 유지하는 것도 자본 조달의 방식이라고 하셨지만 경영 주체가 주부들이다 보니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일단 차입금을 다 해결했습니다. 지금은 총 조합원이 약 7,000명이 넘고 매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5,600여 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 이제는 어떻게 내부의 힘을 축적해서 이후의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협동조합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기존의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두 분의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말씀 해주셨지만 사업을 위한 자본 조달이 결코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는 조금 다른 규모의 자본 조달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택협동조합인데요, 궁금해 하는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여쭙보겠습니다.(웃음) 서민들이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집을 가지는 게 가능할까요? 주택협동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자본 조달의 방법과 계획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진 방식과 주체에 따라 자본 조달의 방식이 다양한 주택협동조합

기노채(주택건설협동조합포럼 대표, 이하 기노채): 우선 주택협동조합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결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협동조합을 추진하는 목적이 수익사업 추구라는 측면보다는 서민층과 중산층 주택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대, 하드웨어 중심의 주택문화를 인간관계와 커뮤니티 중심의 주택문화로 변화 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협동조합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협동조합은 사업추진 주체별로 공공주도의 주택협동조합, 민간주도의 주택협동조합 그리고 공공의 도움을 받아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협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 공공주도의 주택협동조합주택은 민간에서의 자금조달이 없어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먼저 공공주도의 주택협동조합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서구의 주택협동조합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주택파괴로 인한 저소득층의 심각한 주택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공공의 지원 또는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공공에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

여 왔습니다. 따라서 공공주도로 새로운 협동조합주택을 공급하거나 향후 공급예정 임대주택을 임대협동조합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현행법으로 실행 가능한 임대협동조합주택공급을 검토하여 강서구 가양동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도 이 프로젝트에 정책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협동조합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택협동조합이 대도시에서 토지를 구매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많은 사업추진 자금이 필요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주택만 공급받은 것에는 가격 측면에서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양천구 목3동에서 일반적인 크기인 200㎡의 대지를 구매하여 용적률 200%로 400㎡의 주택을 건설한다고 할 때 대략적으로 토지가격 9억 원, 건물가격 5억 원, 설계비용, 인입공사비용, 취득세, 추진경비 등 1억 원 정도가 들어 총 1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금규모도 무척 크지만 원가 구성에서 토지가격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사 전체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매력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분양리스크가 감소하여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고 본인이 살 주택을 직접 건설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요. 따라서 주택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주택에는 기존의 주택에 없는 새로운 가치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또는



기노채 (주택협동조합 준비위원회 대표위원)

커뮤니티가 주는 무형의 가치인 것이죠. 비록 협동조합주택은 아니지만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건설된 소행주 주택¹이나 서울 인근에 지어지는 동호인 주택이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주택협동조합 추진에 있어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사업초기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사례에서처럼 200㎡의 토지를 구입하려면 조합원의 기본 출자금을 백만 원으로 할 때 약 900명의 조합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가입 조합원 수가 부족하면 사업 추진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사업 초기에는 지주공동사업이나 예비입주자와의 공동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도움을 받아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협동조합주택이나 사회복지결합형 협동조합주택 등이 그것인데요, 먼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주택이란 민간주택협동조합이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저렴하게 빌려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공동체토지신탁² (Community Land Trust)이라는 방식으로 이를 실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토지구입 비용이 들지 않아서 주택 구입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400㎡의 건설원가 15억 원 주택에 6가구가 거주한다고 할 때, 일반주택의 경우 1가구 평균원가가 2억5천만 원인데 비해 토지임대부 협동조합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1억 원에 불과해 주거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1 공유집합주택(Collective housing)의 입주자 모집, 토지계약, 설계, 시공 및 입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마포구 소재 마을기업인 <주>소통이있어서행복한주택만들기가 공급한 주택을 말한다. 공유집합주택이란 거주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해, 단위 입주가족의 독립적인 공간 외에 공동식당, 공동세탁실, 공동창고, 놀이방, 공동육아시설 등과 같이 모든 거주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공간과 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을 말하며, 지역에 따라서 코하우징(Cohousing) 또는 커뮤널주택(Communal housing) 등으로도 불린다.

2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개인이 소득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 내의 토지(Land)를 신뢰(Trust)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공유하고 이를 개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토지가치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해도 주택구입에 대한 개인부담이 크게 늘지 않게 되어 주거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된다. 최근 공동체토지신탁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안정성, 지속성이 입증되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의 주택을 결합시킨 사회복지 결합형 협동조합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육아 주택협동조합이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유아를 가진 신혼부부들이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자금으로 공동주택을 짓고, 공공은 1층에 사회복지시설인 공동육아시설을 지어 매우 낮은 가격으로 주택협동조합에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협동조합은 공동육아시설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관리 운영하여 입주자와 인근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주택협동조합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문제와 사회복지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도움을 받아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협동조합 방식의 사업은 사업비도 줄고 입주민의 주택 구입 부담이 낮아져서 조합원의 거주 만족도와 편익이 커지고 커뮤니티 프리미엄이 생기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조합원들에게 자금을 모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 세 분의 말씀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 방법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출자금을 조금씩 쌓아가는 방법도 있고, 협동조합 사업을 위한 초기 자본을 출자금으로 조성할 수도 있구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 방법이 일반 기업의 자본 조달 방법과 어떤 점에서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은 비슷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이 자본 조달 방법에 대해 가져야 할 원칙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향숙: 저는 자본을 모으는 과정에서 특히 차입금의 경우 한 사람에게 많은 금액을 차입 받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개인적인 이유로 차입금을 찾아가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협동조합의 자본이 가지는 불완전성을 피부로 느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울산시민생협은 내부적으로 1인당 차입금 한도를 정하고,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확보해서 약정 기간이 끝난 차입금은 되도록 연장하지 않고 반환하는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지역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자본조달 방법

김대훈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이하 김대훈): 현재 아이쿱의 지역 생협들은 직영 매장 사업을 위해 시중 은행의 금리 수준보다 조금 높은 약 5%의 이율로 조합원들에게 차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조합원과 지역생협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합원의 경우, 시중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이율이 4% 미만이기 때문에 지역 생협에 차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지역 생협의 경우는 직영 매장 사업을 위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제1금융권의 경우 거의 10%에 가까운 이자를 내야 합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10%가 넘는 이자를 지급해도 자본을 대출 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시중 금융권에서는 협동조합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조합원이 주인이다 보니 주인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조합원의 차입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조합원과 지역 생협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은 일종의 사금융 형태입니다. 조합원의 생협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지금은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지만, 예금자 보호 등의 장치가 없는 문제도 있고 자본이 안정적이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 생협은 출자금의 규모와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위한 사업의 충분한 토대를 만들어내기 어렵죠. 차입금이 이자 부담이 있는 대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하지

만, 생협을 탈퇴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때 언제든지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민앵: 저희 살림의료생협은 출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조합원 출자만으로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출자금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생협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때 의료생협 조합원의 경제적 이득이 무엇인가는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릅니다.

사실 의료생협에게는 건강의 개념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생협에서 건강을 지킨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고민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제공도 그 내용이 조금 다르죠.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은 아파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야의 소모임에 참석을 해서 즐겁게 살다보면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결국 일상적인 관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자본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경영을 잘해서 내부 유보를 통해 자본을 확보하는 것인데 막상 해보면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면 병원 개원을 앞두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조합원 할인 혜택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 토론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예방 접종, 내시경, 초음파 등 비보험 진료에 대해 할인 혜택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건 소비자의 마음이고 경영자의 마음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말에 그간의 경영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전체 운영에 대한 세팅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가 융합되는 것이어서 각자의 마인드가 하나로 되는 거죠.

기노채: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협동조합이 자본 조달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출자금의 안정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활협동조합과 달리 주택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상품은 가격이 매우 고가여서 출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협동조합 사업 초기에는 은행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출자금 확보가 사업추진의 관건이 되는 만큼 이런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본 조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민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주택협동조합 자금운영 원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기존의 신용협동조합이나 대규모 소비자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금관리를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협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전문 금융기관이 만들어 진다면 더욱 좋겠지요.

사회: 결국 협동조합의 자본 조달은 조합원의 경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운영 등 협동조합으로서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본 조달 방법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자본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본 조달의 규모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먼 미래의 경제적 이익 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원하는 조합원에게는 내부유보를 통한 자본 조성 방법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민관이 협력하여 협동조합 사업을 시작한다면 협동조합의 자율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죠.



기노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과는 달리 공공과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중·저소득층의 경우 자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개입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해치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 보다는 어떠한 방식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 가능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경우 어느 정도 조합원이 확보되면 출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외부 금융기관의 차입이나 조합원의 차입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지구매 후 공사기간 중 금융기관 차입도 가능하고 규모와 용도별로 다양한 형태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입을 최소화하여 주택을 공급한다면 금융비용이 절감되어 조합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주택협동조합 사업의 핵심은 조합원을 위해서 무조건 저렴한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좋은 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즉, 주택협동조합의 목적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합원이 원하는 주택, 즉, 유지비가 적게 들고 건강하며 안전한 주택을 함께 짓고, 어울려서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본 조달에서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의 주체적인 역량

민영: 살림의료생협이 있는 서울시 은평구에서는 이번



달 말에 은평두레생협과 은평신협이 참여하는 은평지역 협동조합협의회가 꾸려질 예정입니다. 특히 은평신협은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지역의 다른 협동조합에게는 5% 이자로 대출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협의회 틀 안에서 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금융 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모형이 지역에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관협력 사업에서 협동조합 자율성에 대한 문제는 자본의 규모보다는 지역에서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주체적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훈: 그런 생각은 생협의 규모와 상관없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큰 협동조합이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정부의 공적 자금을 받게 되면 스스로 자기 조합의 운영을 결정하지 못하고 정부가 간섭을 받게 됩니다. 또 이렇게 외부에 의해 협동조합의 자율권을 침해받는다면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이 그 협동조합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자본 조달 방법이 무엇이든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유럽의 협동조합이 실패한 사례를 보면 대체로 경영이 악화되고 외부 자본으로 이를 해결하려다가 협동조합의 소유권을 조합원이 아니라 외부 채권자에게 송두리째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는 민과 관이 협력하는 것도 자본 조달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회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는 공공영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생협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입니다. 자금 지원을 빌미로 외부의 간섭을 받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 힘은 다시 조합원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사회: 세 분 모두 조합원의 주인 의식이 분명하다면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한국의 생협들이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대훈: 우리나라에서는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금고 등 개별 협동조합이 각각 금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자신들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금융 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생협 사업을 위한 자본 조달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생협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협의 새로운 사업 분야 개발과 자본 조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12월 1일에 발효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이 금융이나 보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희 아이쿱생협은 현재 자체적인 금융기능을 수행하기위해 직장새마을금고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련 단체나 기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틀의 협력도 고민해 봐야 하지만 살림의료생협 처럼 협동조합 간의 협동에 대한 지역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협동조합 사업을 위한 자본 조달 과정에서 주체적 역량이 중요하다는 민영 이사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협의 자본 조달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초기에 자본 조달에 대해 고민했던 것과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지금의 고민이 서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울산시민생협의 조향숙 이사장님은 어떠신가요?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를 위한 훈련이 필요

조향숙: 저희는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업을 위한 자본 조달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조합원들이 생협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직 활동이 어렵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에는 아이쿱울산시민생협과 아이쿱울산생협이 있는데, 두 개의 지역 조합이 운영하는 매장 5곳과 개인점 2곳까지 더해 자연드림 매장이 총 7개가 있습니다. 매장 사업이 확대되면 지역 생협 이사들의 경영에 대한 부담이 늘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하나의 전문 단위에서 매장을 경영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에 대한 부담이 줄어 지역 생협 활동가들은 자회사를 통해 만들어진 자본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조합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생협의 새로운 사업이 성공해서 조합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조합원에게 미치는 지역 생협의 손길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결국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지만 그저 이용자로만 남아있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협의 조직 활동이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일정 정도 규모가 되면 지역 조합을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조직의 분화를 통해 조합원들과의 활동을 밀착 시키고, 지역 조합을 책임지는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 조합원들은 출자금이나 차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동조합 사업을 위해 경제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길러진 힘은 저희 생협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노채: 공공이 주도하거나 공공과 함께 하는 주택협동조합의 경우는 자본보다 중요한 것이 토지입니다. 토지가격이 너무 높아 서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공공이 직접 임대 주택협동조합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공공에서 보유한 토지를 저렴하게 민간주택협동조합에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용으로 빌려주는 토지임대부 협동조합주택 공급방식 등이 주택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지임대부 협동조합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매매가격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어 조합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의 일정부분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실제 거주하는 조합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한자산 주택협동조합의 추진도 가능해지고 결국 다음 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주택협동조합의 경우는 일정 수준의 조합원이 모여지면 자본조달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주택개발업체의 경우 대규모 자금을 들여서 주택시행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금융비용과 마케팅비용 그리고 미분양으로 인한 리스크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택협동조합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 사람을 먼저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출자금과 입주 조합원의 분양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자금부담과 사업 리스크가 매우 작습니다. 다만 단위 사업의 규모가 다른 소비자협동조합에 비해 크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금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밀접한 협력관계설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대훈: 저는 새로운 자본조달 방법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현재 협동조합들이 놓치고 있는 돈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아이쿱생협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가 매우 많습니다. 그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면 조합원과 지역 생협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쿱에서는 수매선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매선수금 제도는 조합원이 일정 금액을 예치해놓고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거기에서 차감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아이쿱의 지역 생협들이 약 10%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의 사례를 살펴보면 덴마크나 스웨덴의 협동조합들은 소액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아이쿱의 수매선수금 제도와 비슷합니다.

사회: 네 분 말씀을 들으니 협동조합에서 자본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결국 자본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자원을 어떤 순서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년연대

- 다시 꿈꾸고 싶은 청년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연대,
‘청년연대은행(준)’
-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 보게 되리라
-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구속 사건의 쟁점과 진실

다시 꿈꾸고 싶은 청년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연대, ‘청년연대은행(준)’

조금득 (청년연대은행 추진위원장)

청년세대 금융생활협동조합? 그게 가능한 일일까?

청년연대은행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대부분 생소하다는 표정과 함께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 거린다. 보통 협동조합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데다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이 출자금을 모아 협동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지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다. 오랜 시간 실험과 공제협동조합을 만들어 온 전문가들도 청년연대은행이 만들어 진다면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세계 첫 세대별 노동조합이 탄생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음 청년연대은행을 만들고자 했을 때 이 일이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건 우리가 사회안전망은커녕 부모님께조차 위로받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당장 몸이 아프고 생활비가 없어도 마땅히 기댈 곳이 없어 막막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그 고립감과 외로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 즉, 든든한 ‘믿을 구석’이 절실히 필요했다.

청년들이 스스로 만드는 대안적인 사회안전망

청년연대은행은 청년들이 서로 도우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청년협동조합’이자 대안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은행’이란,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금융상호부조의 의미와 함께, 청년들의 다

양한 꿈과 재능이 모여 있어 생활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생활·재능상 호부조의 의미도 담고 있다.

처음 청년연대은행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었다.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 청년유니온은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2011년 한 해 동안 청년들을 위한 상호부조사업 연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15~34세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불안정 노동청년과 사회안전망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7%는 취업 상태이지만 정규직은 19.1%뿐이었다. 취업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21만8천 원이며, 48.5%는 평균 1,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9%는 최근 1년 사이 현금이 없어 급하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생활비(51.0%), 학자금(21.0%), 주거관련비(12.0%)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삼포세대’의 모습이었다.

현재 청년들 대부분은 단기,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 노동을 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학자금대출 상환에 고시원 월세, 교통비, 전화비까지 내고나면 한 달 평균 10만 원 이상의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청년들이 일을 해도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워킹푸어(Working Poor)’로 전락했다.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것은 사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러나 이런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당시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이었는데 연구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상호부조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느낀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 바로 고 최고은 작가의 죽음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아사’라고 표현하며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굶어 죽어.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었나. 친구도 없었어?”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은 그녀의 죽음이 ‘아사’가 아닌 ‘고독사’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느꼈을 고립감과 외로움에 가슴 아파했다. 나 또한 그녀의 죽음이 남일 같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청년유니온 페이스북 그룹에 한 조합원이 쌀이 떨어져서 굶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순간 덜컥했다. 사무국장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과 고민을 듣고 있었기에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조합원은 특히 극작과 출신에 예술가를 꿈꾸던 친구여서 그녀의 죽음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던 터였다.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는 건 아니겠지 걱정이 됐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건 그 글이 올라오자마자 앞 다투어 달린 청년들의 댓글이었다. “우리 집에 쌀이 있다. 어디로 가져다주면 되나”, “나도 라면이 있다.”, “우리 계좌를 열어 모금을 하자.” 본인들도 넉넉한 사정은 아니었지만 쌀을 주고 생활비를 보태겠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금 운동을 하자는 의견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이었다. “이 친구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우리가 무조건 모금을 하는 것은 자칫 이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순간 몽클했다.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청년으로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이야기였다.

그때 생각했다. ‘이게 바로 연대의 힘이구나. 서로 돕고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고 다행스러운 것이구나. 청년들이 서로 도우면서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부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답은 청년 안에 있다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의 임기를 마친 올해 3월, 청년연대은행 설립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청년연대은행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강했지만 금융 사업에 전문성이 취약한 나로서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처음엔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에 몰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고독감이 밀

려왔고 결국 답은 청년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 있다는 결론을 냈다. 그렇게 4월부터 창립멤버들을 모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청년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포커스그룹을 통해 만난 청년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외로움’이었다. 주거, 먹을거리, 건강, 의료 등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본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했다. 고시원에서 생활한다는 한 여성 참가자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도 무섭고 고시원이 고립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어떻게 위험에 처할지 몰라 걱정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어릴 때 학급에서 진행했던 비상연락망처럼 취업과 학업 때문에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동네 청년들이 비상연락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청년들이 모여 안전망을 만들고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청년공동체가 있었으면, 그리고 청년연대은행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다.

구직자, 비정규직, 월세를 내면서 혼자 사는 청년, 부모님과 살면서 자립을 엄두도 못내는 청년 등을 만나면서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의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청년들을 만났다고 자부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청년들의 생활과 고민을 듣게 되면서 청년들과 함께 해야 할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아졌다.

또 금융권을 비롯한 사회 여러 곳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의 상황을 보면서 ‘소외되는 청년들 없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상호부조 조직’을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의 요구를 좀 더 자세하게 조사했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며 청년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상호부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시스템

청년연대은행에서 고민하는 금융상호부조 시스템은 긴급한 생활비를 빌려주는 소액대출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이 청년들의 자립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액대출과 함께 자신의 재무 상태를 돌아보고 지금의 재무 상태에 맞게 살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무 상담과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와 함께 ‘청년재무상담사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청년연대은행 소속 청년재무상담사들이 양성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를 돕는다거나 생활물품 등을 나눌 수 있는 생활상호부조와 자신이 갖고 있는 외국어나 자격증 공부, 정서, 직업 상담 등 다양한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재능상호부조 시스템을 함께 두어 청년 당사자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청년금융생활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청년연대은행 워크숍

만날수록 깊어지는 협동과 상생의 가능성

‘청년금융생활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청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처음엔 다양한 자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다양한 청년 팀들을 만나보니 그건 기우였다. 청년들이 모이니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다. 주거, 먹을거리, 의료, 생활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영역은 참 다양하다. 청년연대은행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청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면 적어도 든든하고 믿을만한 정보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정보망을 통해 생활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네트워크 정보망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조금 더 저렴하고 건강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조금 더 안전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즐겁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들이 모이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조금씩 청년들 간의 협동과 상생의 가능성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가슴 설렌다.

마음 든든한 세대 간 연대의 가능성

얼마 전 한 중년신사 분이 ‘베이비부머세대 협동조합’을 고민하고 있다고 조언을 부탁한다며 사무실을 방문했다. 우리도 아직 준비 단계라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우린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세대별 협동조합이 단순히 자기 세대의 고민과 이익을 넘어 사회적으로 연대하고 협동과 상생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는 취업, 사회 정보에 청년보다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청년들은 인터넷과 매체에 대한 정보력이 있으니 서로를 위한 멘토 역

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즐거웠다.

청년세대의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생각할 때 베이비부머 세대 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연대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은 청년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

청년연대은행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청년연대은행은 어떤 조직형태를 가지고 갈 것인가와, 또 하나는 조직이 튼튼하려면 출자금에 많이 모여야 할 텐데 기업이나 단체 등과 연계해 시드머니(Seed-Money)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조직형태를 협동조합이나 법인 등의 법적 테두리 조직을 만들 고민은 없다. 물론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지만 청년들에게 맞는 상호부조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제협동조합과 같이 법적 규제 없이 자체의 규칙만으로 운영되는 임의단체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출자금 확대를 위한 시드머니에 대한 고민은, 처음 청년유니온에서 청년연대은행을 설계했을 때는 5천만 원의 시드머니를 모을 계획이었다. 그래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청년연대은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연대은행이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협동과 상생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적은 돈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한 유명한 사례로 ‘동자동 사랑방마을공제조합’의 이야기가 있다. ‘동자동 사랑방마을공제조합’은 기초수급자가 대부분인 동자동 쪽방촌의 주민들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도움을 받기 위해 만든 지역협동조합이

다. 이곳에서도 설립초기 외부 자금을 지원받아서 출자금을 늘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마을에 가장 고령자인 할머니가 “외부에서 큰돈이 들어온다는데 누가 협동하려고 하겠느냐.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다. 물론 청년연대은행은 동자동과 규모도 다르고 상황도 많이 다르지만 ‘협동과 상생’의 원칙만은 같이 지키고 가야 할 가치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또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 창립 후에 구체적으로 정리할 것 같다.



청년들의 동자동 쪽방촌 추석봉사



캔맥영화제

계획과 바람

현재 내년인 2013년 2월 23일 설립을 목표로 30명의 추진위원들이 정관제 작팀, 기획팀, 홍보팀으로 나누어 설립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엔 청년연대은행 설립 D-100일 행사를 진행해, 청년들이 함께 청년연대은행을 잘 만들어 보자는 다짐에서 설립 전까지 각자의 공약을 만들어 출자금을 저축해 보자는 결심도 했다.

지금까지 진행한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 8월, 총 4강에 걸쳐 청년들에게 필요한 재무교육과 협동조합을 주제로 ‘여름기획’ 강좌를 진행했고, 10월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캔맥영화제’를 오픈했다. 그리고 오는 11월 27일부터 ‘청년재무상담사 양성과정’이 시작될 예정이고, 12월엔 조합원 송년행사, 2013년 1월에는 청년연대은행 설립을 위한 후원의 밤, 2월에는 청년연대은행 창립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청년연대은행이 꿈꾸고 싶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것과 나누고 싶은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지역에 청년연대은행을 세우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대안사회안전망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연대은행을 통해 청년들 스스로가 서로 도우며 자립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다시 꿈꾸기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동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청년들이 다시 꿈꾸게 됐을 때 그 꿈은 청년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회도 두근두근 미래가 기대되는 사회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청년연대은행과 함께하고 싶다면

현재 조합원과 후원출자자, 후원회원으로 함께 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다. 조합원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의 출자금은 탈퇴 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저축기능), 조합원 상호부조(긴급 소액 대출)의 용도로만 사용된다. 후원 출자는 조합 가입 기준(만15세~39세)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도 출자의 창구를 열어 둔 것이다. 후원 출자금은 조합원 출자금과 동일하게 청년들을 위한 긴급소액대출로 사용되나, 후원 출자자에게는 긴급소액대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단, 출자금은 탈퇴 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출자해 주신다면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출자 이외의 후원도 받고 있다. 후원금은 청년연대은행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하며, 후원금 사용 내역은 매달 소식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청년연대은행 회원이 되면 재무교육 및 상담, 다양한 분야의 기획 강좌 및 교육 참여, 소모임, 세미나 등 청년공동체 활동 참여, 구직, 금융 등 각종 정부지원 정보 공유, 봉사 등 사회참여 활동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한일교류사업

- 청년연대은행 다음카페

<http://cafe.daum.net/ybank1030>

- 청년연대은행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100daystogo>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 보게 되리라 -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구속 사건의 쟁점과 진실

김남주 (변호사)

날이 추워졌다. 그는 추위를 많이 탄단다. 그래 보였다. 10월 중순 여주교도소를 찾아가 보니 추위에 떨고 있었다. 한사코 “난 괜찮아. 여기서 밍크 이불이고 뭐고, 다 살 수 있어. 아무 걱정 마!” 단호하게 안심시키려 했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근데, 여긴 강원도래”, “새벽 2시에 추워서 잠이 깨더라.” 조금 솔직하게 말했다. “여보! 교도소 와서 처음 미사를 갔어. 성가 400번 알지 ‘주님과 나는’을 부르는데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 보게 되리라’ 대목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맞은편에 앉은 그의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헌법소원에 대한 대책 등 주로 사무적인 대화를 끝으로 면회 시간은 끝나고, 나올 때가 되어서야 그는 그제야 아내에게 안부를 물으며, 정이 넘치는 눈빛으로 어깨를 안아 주었다.

그가 천국의 영광을 보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세상의 꿈이 모두 사라진 건 맞는 것 같다. 교육감 지위도 잃었고, 징역 1년 실형을 살고 있고, 선거비용보전금 약 35억 원도 반환해야 하는 처지다. 무엇이 그에게서 세상의 꿈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었을까?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만큼 그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나?

요즘 메말랐던 감수성이 다시 살아난다.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감사하다. 신문을 읽을 때마다 억제할 수 없는 슬픔에 흐느끼기도 한다. 비단 광노현 때 문만은 아니다. 인혁당이 그렇고, 쌍용차가 그렇고, 세상만사가 다 그렇다. 어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랴. 나도 이 글을 통해 광노현 교육감의 변호인으로서 그 재판과정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려 한다. 광노현의 이야기를 듣고 감성이 더 충만하길 바라며 글을 시작한다.

공직선거법에는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기간이 아닌 어느 때라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했다. 작은 기부라도 받는 사람에게 호감을 생기게 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다. 조금 경직된 것 같지만, 재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정책과 인물로만 경쟁하게 하도록 필요한 규정이다. 이렇듯 선거법은 선거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제재로 형사 처벌을 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처벌되면 당선을 무효 시키고, 국가가 대신 지불해준 선거비용 보전비를 다시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제재를 위한 전제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 하였는가 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이런 칼을 빼 들 필요가 없다. 그럼 박노현 교육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을까?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바꿔보면, 박노현 교육감은 박명기 후보를 돈으로 매수해서 사퇴시킨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올시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법원도 인정한 사실은 “박노현 후보의 회계책임자와 박명기 후보 측 선대본부장은 선거비용보전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박노현 후보 측 선대본부장이 이를 보증했다(이 사건을 5.19 합의라 한다). 하지만 박노현 교육감은 이 합의에 관여하지 않았다”였다. 박노현 교육감이 이 돈거래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박명기 후보의 사퇴 의사 결정 과정에 돈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선대본부장과 회계책임자가 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후보가 이를 모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대목인 것 같다. 박노현 교육감이 관여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검찰은 지독하게 매달렸다.¹ 진실이 최선의 변호라는 박노현 교육감의 주문이 있었기에 변호인들

1 이 사건을 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 검찰은 기소 전에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크게 다른데, 왜 대질신문을 하지 않았을까?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시간이 급해서인가? 이다.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 개시한지

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법원도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하게 실천했다. 공판중심주의란 검찰의 수사서류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증언과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이다. 그래서 1심에서 4개월간 20여 차례가 넘는 재판이 열렸다. 대부분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심야까지 이어졌다. 특히, 합의당사자 3인의 진술이 엇갈리자 대질신문까지 했다. 그 대질신문에서는 통상적인 증인신문과 같이 증인들이 질문에 대답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증인과 피고인에게 묻는가 하면, 피고인 상호간에도 묻기도 했다. 마치 100분 토론과 같이 모든 참여자가 공격과 방어를 치열하게 했다. 1심 마지막 재판 날은 마치고 나니 다음날 새벽 3시였는데, 그런 1박2일 재판은 다반사였다. 또 특이한 점은 재판장이 로드뷰를 좋아한다는 거다. 재판 중간에 모임 장소가 인사동에 있는 한정식집 ‘향정’이라고 하니 즉석에서 로드뷰로 찾아보고 프로젝터로 보여주며 증인에게 확인해 갔다. ‘향정’, ‘마젤토프’, ‘여자만’, ‘오설록’, ‘퍼시픽호텔 커피숍’, ‘달개비’..., 이렇게 모든 장소를 다 법정에서 찾아보면서 그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다. 이런 지독하고 엄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낸 결론이 박노현 교육감은 5.19합의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니 의구심은 내려 놓으셔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재판과정을 통해 밝힌 5.19합의 과정은 어떤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박노현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단일화에 돈 문제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밝혔다. 진보 교육감인지라 당선되어도 사정기관이 철저하게 뒤져 꼬투리를 잡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불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선거사범이 되어 당선되지 않은 것만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박노

20일 만에 전격 기소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일은 그로부터도 20여일 후인 10월 7일인데, 기소는 9월 중순에 했다. 진술이 엇갈려 사실이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사를 더 하고 그 결론에 따라 기소해야 정상일 거다. 무상급식 찬반 투표 무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등 정치일정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의 전격 기소에 그런 정치공학이 숨어 있으리라고 믿고 싶지 않다.

현 캠프 관련자들 중에는 곽노현 교육감 생각과 지시와 다르게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상해 주고서라도 꼭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 도저히 그를 설득할 수 없으니 모르게 일을 해치우려 했던 것 같다. 박명기 후보 선대본부장도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진영의 역적이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후보사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돈 지급 약속을 한 당사자들은 동서지간으로 선거나 정치 경험이 전혀 없던 손위 동서가 그들의 각본에 휘둘렸던 것 같다.

손위 동서인 곽노현 후보 측 회계책임자는 5.19합의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박명기 후보 측 선대본부장은 정계에 경험이 많고 책사 같은 사람인데, 나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형님은 당사자만 되 주시면 된다고 하면서, 모금을 하던 출판기념회를 하던 돈을 모을 방법이 다 있고, 진영에서 책임지고 할 것인데, 형식적으로 당사자만 되주시면 된다”고 하기에 그러자고 했다. 합의 후에 곽노현(대학 동기 사이)에게 전화해 단일화 됐으니 기자회견 준비하라고만 전하고,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손아래 동서가 알아서 한다고 했고, 진영이 할 일이라고 하니 곽노현이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곽노현 후보 측 선대본부장은 증인 신문에서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 한참 후에 곽노현 교육감이 식사하자고 나가보니, 박명기 교수가 왔고, 곽 교육감이 저에게, ○교수가 약속했어? 그럼 당신이 책임져! 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론적으로 5.19합의 당사자들의 생각은 민주진보진영 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후보 단일화가 필요한 상태에서, 박명기 후보는 단일화를 위해 그간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것을 조건을 내걸었지만, 곽노현 교육감은 단일화를 위해 돈이 지급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난관을 풀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후에 출판기념회나 모금 운동을 통해 박명기 후보에게 선거운동비용을 모아 주는 것이지만, 박명기 후보 자존심 등을 고려해 곽노현 후보가 마치 돈 지급하는 합의를 한 것처럼 형식을 만든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은 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통해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곽노현 교육감 본인이 직접 5.19 합의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보매수죄’를 범하지 않았다. 연대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겠으나, 형사 책임은 개인책임이라서 지휘책임을 묻지 못한다. 선거운동본부 관련자들에 대한 지휘책임은 재선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물을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곽노현 교육감을 형사 처벌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여기서 잠깐 왜 박명기 후보는 후보사퇴에 돈을 요구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자.

선거에 돈 이야기가 나오니 우선 부정한 의미가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나도 사건 초기부터 다시 서울교육감 단일후보 경선 후 사정을 알고 날 때까지 박명기 후보를 매우 도덕적으로 저열한 분으로 생각했다. 가슴속으로 반성하고, 그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겠다.

선거에는 돈이 들어간다. 그것도 꽤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돈 없는 정치인도 당선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득표수를 넘기면 선거비용을 전액 또는 반액 보전해 준다. 그런데 후보등록을 하지 않거나, 후보등록을 했더라도 일정 득표수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지원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문-안 단일화에서 패한 후보는 선거비용을 국가에게 지원받지 못한다. 만약 지원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후보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비용 면에서 더 억울할 것이다. 억울한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 때문에 단일화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완주를 고집할 수도 있다. 단일화 세력은 보통 기득권 세력이 아닌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그런 현실 속에서 사퇴한 후보의 선거 비용 문제로 인해 선거연합 또는 연합정치(단일화)에 제약을 가하는 꼴이 되고 그 반대로 단일화 반대 세력에게 이득을 주는 꼴이 된다.

더욱이 교육감 선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다면 국민들이 모금을 해서라도 수십억 원의 선거 비용을 해결해 줄 수 있

다. 그런데, 교육감 후보였다가 사퇴한 사람은 국민들이 도와줄 수 없고, 오로지 후보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후원금은 정치자금이라 후원회를 통해 받아야 하는데,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후원회를 할 수 없고, 후보 사퇴를 한 상태에서도 후원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선가능성이 있는 유력 후보라서 선거비용을 많이 지출한 후보자라면 더 단일화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박명기 후보가 딱 그런 후보였다. 이미 지출한 비용과 후보 사퇴하면 발생할 위약금을 합하면 7억+@가 된다고 했다. 완주하면 충분히 15%이상 득표할 후보였다. 전액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상태에서 박명기 후보는 민주진보진영의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낙선될 경우 ‘역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 파산을 감수하며 사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문제를 광노현 후보에게 공감해 주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충분히 공감하는 문제이지만 현금으로 돕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럼 광노현은 약속도 하지 않았으면서 왜 선거 후에 돈을 주었나? 또 다시 의문이 들것이다. 광노현 교육감은 선의라고 하고, 검찰은 매수의 이행이라고 하며, 법원은 사퇴한데 대한 대가라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우선 광노현 교육감이 이 문제가 언론에 나자 첫 기자회견에서 “선의의 부조로 2억 원을 주었다”고 말했다. 나로서는 이제 이 사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광노현 개인도 알고, 가족도 알게 되어 충분히 ‘선의’일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2억이라는 그 큰돈을 선의로 줬다는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선의’대 ‘매수’ 프레임은 실패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선의’의 말속에 ‘잘난 척’, ‘착한 척’ 한다는 인상을 준다. ‘선의’에 선뜻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매수인가’, ‘매수가 아닌가’ 라고 했다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후보사퇴시키기 위해서 돈을 줄 이유가 없어졌고, 아무리 약속했다 하더라도 발뺌하면 그만인 약속을 지킬 정치인은 없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아무튼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수의 이행은 확실히 아니고, 선의일 수 있겠다는 것이다. 광노현 교육감이 직접 매수 약속을 안 했고, 참모들이 했다고 해도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면 법적으로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매수의 이행은 확실히 아닌 것이다.

그럼 선의인가 살펴보겠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박명기 교수는 후보사퇴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봤다. 거기다가 앞서 여러 번의 선거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궁했는데, 이번 후보사퇴로 인해 치명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한다. 박명기 교수가 법정에서 이 대목이 나오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을 고려하여 경제적 곤궁의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경제적으로 곤궁한데다가 광노현 교육감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당선된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오해한 박명기 교수는 광노현 교육감과 그 측근들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을 가했다. 그 결과 광노현 교육감은 후보 사퇴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후보사퇴에 어떤 약속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모 국회의원에게 전해 듣고 지인과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박명기 교수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비서실장과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정신적 멘토인 강경선 교수였다. 그들은 박명기 교수를 찾아가 5.19 합의의 구체적인 과정을 듣고 광노현 교육감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납득시켰다. 그리고 박교수가 경제적으로 곤궁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광노현 교육감에게 이를 전했다.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진정으로 그들은 화해했다. 박명기 교수는 법정에서 그 화해의 순간을 설명하면서 그 순간 자신이 읊었던 시를 멋들어지게 다시 읊었다. 그런 과정에서 강경선 교수는 광노현 교육감에게 수차례에 걸쳐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곤궁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없고, 경제적 곤궁으로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되면 교육감직 유지도 어렵게 된다고 설득했다.

광노현 교육감은 후보 매수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반대했다. 그러나 경제적 곤궁을 외면할 수 없었고, ‘사고가 우주까지 닿아있다’고 믿는 강경선의 끈질긴 설득에, 만약 법이 자신들의 선의를 오해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그것은 법이 아니니 끝까지 싸우겠다는 마음을 먹고 2억 원을 주었다. 결국 광노현 교육감은 오해를 받아 법정에 섰고, 선의는 용납 받지 못해 감옥에 갔다. 그리고 그 악법과 끝까지 싸우기 위해 옥중에서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강경선 교수도 같이 기소되어 재판부에게 자신이 주범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찌 범죄사실로 뒤바뀌었는지 내 상식으로는 알지 못할 일이다.

광노현 교육감과 우리 변호인들의 법정 주장은 간단했다.

광노현 교육감은 돈으로 후보 사퇴를 매수하지 않았고, 매수하지 않았는데도 사퇴한 후보에게 돈을 줬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이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즉, 후보 사퇴 전에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사퇴를 했고, 그 후에 경제적 곤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우려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돈을 준 것인데, 이미 사퇴한 후보를 그 후에 준 돈으로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 것이고,² 법조문에 ‘목적’이 필요하다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목적범³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광노현 교육감에게는 매수할 목적이 아니라 부조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만약 광노현 교육감 사건을 처벌한다면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않아 처벌할 가치가 없는 사안까지 처벌하게 되어 처벌이 지나치게 되고, ‘후보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라는 법 규정이 어법에도 맞지 않고 의미도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⁴ 만약 유죄라 하더라도 그 처벌이 최하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규정

2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3 목적범이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는 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통화위조죄는 단순히 화폐를 위조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할 목적’, 즉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범은 범죄 성립에 더 엄격한 요건을 두어 처벌이 무한히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기술이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후매수죄는 목적범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매수할 목적이 필요 없다고 해 결국 광노현, 강경선 두 피고인 모두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4 일본법을 그대로 베껴와 어법에 맞지 않아 형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선에 영향 없는 행위로 당선을 무효 시킬 필요가 없으며, 범죄행위와 처벌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의 상당 부분을 위헌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합헌이라는 것이다. 조만간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해 선고가 있을 예정이므로 그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 다만 대법원이 같은 사안으로 헌법재판 중인 법률에 대해 먼저 판단한 점과 판결문의 상당부분을 위헌성 판단에 할애한 점을 볼 때 헌법재판소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만약 그런 의도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중 정도가 약한 한정위헌 결정⁵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은 합헌이라는 판단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정위헌결정이 나왔지만 광노현 교육감의 유죄판결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⁶ 즉, 대법원은 광노현 교육감의 재심신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이 아니므로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정위헌에 대한 이런 대법원의 태도는 여러 사례가 있다. 헌법재판소와 가장 첨예하게 갈등하는 부분인데, 헌법재판소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을 직접 취소해버리는 강수를 두고 있다.⁷ 만약 헌법재판소가 광노현 교육감 사건을 한정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재심기각, 대법원 판결 취소, 고등법원이 재심 심리 부진행의 사법파동이 예견된다.

5 법률 또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심판 대상이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섞여 있을 때 합헌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6 형이 확정된 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있으면, 당연히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유로 법원에 다시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한다.

7 대법원 재심기각결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취소되더라도 광노현 교육감이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즉, 대법원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되지만 재심개시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되지 않아 재심 재판을 개시할 수도 없고, 개시결정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재심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 째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은 공범인 곽노현 교육감과 강경선 교수에 대한 결론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공범 사이에 결론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부조를 하도록 제안하고, 설득하고, 돈을 전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강경선 교수와 그 제안에 설득당한 곽노현 교육감은 결론이 다를 수 없다. 대법원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법리적으로 목적범이라 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잣대를 들이 대 한 사람에게에는 목적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에는 없다고 했다. 많은 법조인과 지식인들은 이런 모순은 법리에 따라 논리적인 판결에 이른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법리를 짜 맞추었다고 생각한다.

세 번 째 문제점은,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 재판을 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대법원 스스로 법률 절차에도 맞지 않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법률 용어로 하면 파기환송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항소기각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파기재판을 했다는 말이다. 이는 법을 준수해야 할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네 번 째 문제점은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법원 조직법은 대법원 재판 방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14명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되, 중요사건이 아니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의견이 일치한 사건에 한해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판을 한 대법원 2부는 10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 전원에게 배포한 다음 전원이 모인 간이평의⁸에서 결론을 내려 다시 2부에서 재판했다고 한다. 만약 2부에서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달라 간이평의에 갔다면 이는 ‘부’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때만 부에서 재판하도

8 간이평의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평의로서 관행으로 설치되어 운영된다고 한다. 그 운영 이유는 대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의 양은 방대한데 재판관 14명이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적 관행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심판범위, 즉 권한을 축소하거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록 한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밝혀 대법원 개혁의 시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면 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⁹ 마지막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 일본 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항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후매수죄 규정은 제정된 후 60년 만에 광노현 교육감에게 첫 적용되었다. 당연히 위헌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후보자 매수죄 조항은 모든 단일화를 위태롭게 한다. 정치연합의 방편으로 공직을 배분하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DJP연합 뿐만 아니라 지방 공동정부를 구성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등 야권의 모든 선거는 이미 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이들이 힘 있는 정당 소속이라 쉽게 못 건드릴 뿐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겠다. 광노현 교육감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 

9 1심 판결문만 200쪽에 달하고, 재판기록은 1만 쪽이 넘을 것이다.

아이쿱 생협만평

이 동 수

대선공약 레스토랑 - 내 몸에 맞는 선택을~!



제목을 써놓고 보니 사실 대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음식과 우리의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아직, 거기 그들이 있다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겨울

이혜정 (기록노동자)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벌인 77일 간의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굳게 닫힌 공장 밖에서 마음을 졸이던 아내는 3년이 지난 2012년 11월 20일 새벽, 철탑 앞에 주저앉는다. 타들어가는 그이의 마음도 모르고 바람은 점점 매서워진다. 손발이 얼어붙는다. “좁은 공간에 장시간 있어서 다리에 마비가 온다. 추락할 것 같다”는 한상균 쌍용자동차 전 지부장의 문자를 전해들은 이들은 애가 끊는다. 세 사람을 고공으로 다시 올려 보내야만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워진다. 이토록 사람 목숨에 무심할 수 있는가. 철탑에서 붉은 현수막 두 줄이 내려온다.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

국정조사를 통해 정리해고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 그토록 무리한 요구인 걸까. 수십 년을 일해 온 일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가.

쌍용차 해고자들은 41일 단식으로 사람이 혼절해 나가도 꿈쩍 않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안다. 야속하다. 어느 해고자는 트위터에, 혹은 무심한 세상에 또박또박 외친다. 김정우 지부장, 그가 혼절할 때까지 정부는 어디 있었느냐고. 국회는 어디 있었으며, 당신들의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진실을 규명하자는 우리의 절규는 결코 당신들에게 가 닿을 수 없는 것이냐고. 그의 목소리가 가슴을 텅, 텅 울린다.

벌써 스물 세 명의 아까운 목숨들을 보냈다. 정부는 재벌 뒤편무늬를 쫓기 바빠 노동자들의 죽음에 관심이 없고, 정치인들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두고

대선 판에서 주판알을 튕기기 바쁘다. 반듯한 옷차림으로 당선만 되면 해결 하도록 노력해 보겠으니 표를 달라는 이들의 방문은 선거일을 앞두고 하나 둘 이어진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노력’ 속에 ‘해고자 전원복직’이나 ‘정리해고 금지법’이 없는 이상 희망은 없다는 것 또한 노동자들은 잘 알고 있다. 자본을 비호하는 정부, 정리해고를 용인하는 이 나라에서 이제 더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극한으로 내몰린 해고자들은 얼음장 같은 철타를 붙들고 오른다. 남은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어느 해고자는 그래서,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다.

해고된 지 8년, 이제 어떻게 더 싸워야 할지...

정리해고 된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또 한번의 겨울을 맞고 있다. 철타에서, 도심의 길바닥에 주저앉아, 혹은 텅 빈 공장에서, 다시 천 천막 속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입김을 보며 또 한번의 겨울이 온 것을 실감하는 사람들. 이제 담요의 계절이 왔다고 농을 치지만 또 한 해가 갔구나 싶고, 이제 또 어떤 투쟁을 해야 하나. 마음이 답답해진다. 올해 5월 11일, 과천 코오롱 본사 앞에서 다시 천막농성을 시작한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이하 정투위) 최일배 위원장의 탄식이다. 3보1배, 크레인 농성, 한강다리 기습 시위, 구미공장 송전철타 농성, 단식, 본사 로비 점거, 이웅렬 코오롱 회장 집 담을 넘어 만나달라고 요구하다 구속되기까지 치열했던 2년이 지나고 올해로 복직투쟁 8년째다. 정말 “죽는 것 빼고는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싸우는 게 잘 싸우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린다. 극단적인 투쟁이 아니면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다시 그 처절했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예감.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텐트 안의 공기는 차다. 어깨를 잔뜩 움크리고 앉아서 그는 서슴없이 “필요하다면 주저하거나 망설임 이유가 없어요. 해야죠”라고 한다.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진 지금, 투쟁의 수위를 얼마만큼 높여야 할지에 대해 그는 다시 고민하고 있었다.

2004년 회사는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2004년 8월 ‘구조조정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담보로 노조는 실질임금을 20% 삭감했다. 처음엔 1,400명 구미공장 조합원 중 300여 명을 구조조정 한다고 했는데 당시 430명이 희망퇴직을 하고 나갔다. 목표치가 넘었음에도 회사는 구조조정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노조 집행부는 임금을 15% 더 삭감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할 수 있는 한의 노력은 다 한 셈이었다. 그러다보니 회사가 정리해고를 감행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5월 21일 해고통보를 받았고, 78명 중 50명이 모여 정투위를 꾸렸다.

“당시는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더라도 길어도 6개월 정도면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되면 우리의 억울한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판결이 날 거라고. 그 중 한 명이 ‘나는 1년 반 싸울 준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돌았나. 혼자 싸워라’(웃음) 그렇게 출발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시작했다. 봄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과천 본사 앞 코오롱 정투위 농성장

무슨 시위 하시는 거예요? 면담요구요

그렇게 시작된 싸움이 1년을 향해 가던 어느 날이었다. 2006년 3월 17일 코오롱 본사 로비에서였다. 조합원들이 경찰과 용역경비들에게 두들겨 맞고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최일배 위원장은 커터칼을 꺼내들었다.

“(조합원들에게) 손대지 마! 손대지 마!”

그날 자해를 하려던 그를 구급차에 실으면서 119 구급대원이 뒤따라 온 조합원 한 명에게 물어보았다.

“지금 무슨 시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 면담요구요.”

지난 11월 10일 제20회 전태일문학상 시상식에서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은 동영상으로 인사말을 하던 중 눈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코오롱의 본사 점거 투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였다.

“(코오롱 해고자들이) 본사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몇 년을 싸우면서도 사장 한번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본사의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건물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용역경비, 구사대들, 경비들이 본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막았겠어요. 위원장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려다보니까 조합원들이 위원장을 에스컬레이터 태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올려 보내기 위해서 격렬하게 용역경비들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혼자 올라가는 동안 그 조합원들을,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단지 ‘면담 요구’가 그들의 목적이었다. 만나 달라는 것. 얼굴 보고 이야기 하자는 것. ‘사회주의노동자네트워크(사노넷)’의 ‘현장디카’ 코너에 기록된 당시 상황은 처절하기 이를 데 없었다.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용역경비들과 경찰들에게 새까맣게 둘러싸여 최일배 위원장은 울며 외쳤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우리가 뭉둥이를 들었나? 맨몸으로 교섭하

자는데 경찰이 왜 지랄이야!”

조합원들이 위원장의 팔목을 붙잡고 이야기했다.

“죽지 말고 투쟁하자.”

그도 울고 조합원들도 울었다. 열흘 뒤 3월 27일 코오롱 해고자들은 이웅렬 회장 집을 찾아갔다. 단지 회장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다. 유서를 써 두고 나선 길이었다. 그는 유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음’ 뿐”이라고 했다.

“마지막 남은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습니다…이 투쟁의 모든 책임은 저 하나로 끝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동지들의 희생이 담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최일배 위원장의 유서 중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선 그 순간에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철탑 위에 동지들을 올려놓고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다. 그는 손목을 그었고, 경찰은 피범벅이 된 그를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노래방 도우미와 잘 놀지 못하는 것이 합법적 해고 사유?

2006년 9월, 그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해고자들은 컨테이너 위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다. 다음해 4월 코오롱 50주년까지만 투쟁해보자고 했다. 생계 때문에 버티기 힘든 사람들은 생계투쟁을 보내기로 했고, 이들은 그렇게 번돈 가운데 투쟁기금으로 50만 원씩을 내놓았다. 그러나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민사 소송 등 모든 재판에서도 다 졌다. 회사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철저하게 갖춰놓은 상태였다. 절망적이었다. 노동부나 구미시청에서 중재를 서 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회사는 “우리는 코오롱 해고자들과 법적인 관계가 끝났으니 저들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다. 지친 해고자들이 알아서 그만둘 테니 아예 나서지 말라고도 했다. 회사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노래방 도우미와 잘 놀지 못하는 것이 합법적 해고사

유라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울분을 터뜨렸다.

“동력팀에서 근무했던 동지가 한 사람 있어요. 이 동지는 일을 좀 더 잘하려고 업무가 끝나면 자비를 들어서 동력 자격증을 더 취득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는 동지였거든요. 그런데 해고 통보를 받은 거야. 너무 억울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서 부서장을 찾아갔어요. 부서장이 그러더라는 거야. ‘너 일 잘 하는 거는 인정한다. 공장 사람들도 다 안다. 그런데 너 노래방 가면 도우미랑 잘 못 놀지 않냐. 그게 이유다.’ 그렇게 툭 던지듯이 뱉더라는 거예요.”

얼토당토않은 해고사유는 곧 해고의 기준이 없었음을 의미했다. 노조 전, 현직 간부와 현장에서 바른 소리를 하던 사람들은 모두 78명 해고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정리해고는 명백하게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수단이었다.

“다른 이야기 다 집어치우고, 2005년 당시 코오롱이 재계순위 23위였어요. 그런 대기업이 78명 정리해고 하면 경영위기가 해소되느냐는 거죠. 이제는 공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정리해고 해서 노동조합 무력화 시키고 어용노조가 들어서는. 코오롱도 그런 목적이었어요.”

8년, 가슴을 훑고 지나간 상처, 상처들

2009년에만 해도 함께 하는 동지들이 스물아홉이었는데, 그나마도 세월이 다 앓아갔다. 지금은 열여섯이 남았다. 위원장이 “이제 열여섯 남았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려온다. 그이가 잠시 말을 잊지 못하는 동안 “스물아홉”, “열여섯” 하고 차례로 가만히 발음해본다. 그 짧은 음절, 음절을 헤아리는 동안 언뜻 그 사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들어왔다 사라진다. 그가 떠나 보낸 동지 이야기를 꺼낸다. 투쟁을 시작할 때 그 형님 딸이 아빠 투쟁 지지한다고 편지까지 쓰고 그랬었다고. 아빠가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것들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딸이 편지에 그렇게 썼더라. “아빠, 힘내세요” 라고.

“그런데 투쟁이 3년째 접어들 때 그 딸이 아빠에게 욕을 해요.”

최 위원장은 그 말을 꺼내면서 울컥 목이 멘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지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는 목이 멘다.

“엄마를 고생시키는 무능력한 아빠. 아빠가 정말 원망스럽다고. 그렇게 바뀌어요. 결국 그 형님이 투쟁을 포기했어요.”

투쟁 2년차일 적에,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내미 이야기도 꺼낸다.

“과천 본사 맞은편에 천막치고 있었을 때였어요. 집사람은 일을 하러 나가니까. 한 저녁 8시쯤 되었는데 아들내미한테 전화가 와서는 그러는 거야. ‘아빠, 배고파.’ 그럴 때는 정말이지……. 내가 왜 이리고 있지? 그런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런 고비들을 많이 넘겼죠.”

“복직투쟁이 뭐야, 아빠?”

올해 2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해 걸어 나가는 ‘희망뚜벅이’ 행진 때 열린 ‘뚜벅이 백일장’에서 최일배 위원장의 <복직투쟁이 뭐야>라는 시가 당선되었다.

“초등학교 입학한 딸이/ 설문지를 갖고 왔다/ 직업과 생활 내역 조사하라는 내용이다/ (줄임)직업…… 뭐라고 하지. 그냥 대충 속일까. 잠시 고민하다가/ ‘정리해고 복직투쟁 중’이라고 말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복직투쟁이 뭐야?”라고 묻는다/ (줄임)/ 옆에서 한참 지켜보던 아내가 말한다/ “됐거든, 그냥 무직이라고 쓰지”란다/ (줄임)/ 슬프다. 한 번도 무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결국은 ‘노동자’라고 썼다/ 딸이 고개를 갸웃거리든 아내가 면박을 주든/ 나는 자랑스러운 노동자이니까 / (줄임)/ 이제부터 딸에게도 노동자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뇌’를 시켜야겠다/ 아내가 없을 때”

그에게 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다. 딸 이야기는 할 게 너무 많다고 너스레를 떠난다.

“2006년 구속되었을 때, 딸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애가 받을 충격 때문에 석 달 만에 아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가 와 있는 곳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그런데 아빠처럼 이런 일을 하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을 양심수라고 부른다. 아빠는 여기 있는 것에 대해 우리 딸한테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우리 딸도 아빠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딸한테 답장이 왔어요. ‘아빠가 자랑스럽다’고요. 그렇게 한 다섯 달 만에 딸애가 면회를 왔어요. 여름이었거든요. 토요일 아침 10시에 면회 예약을 했는데 차가 밀렸던 모양이에요. 날은 더운데 주차장에서 뛰어온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본다는 생각에 며칠 전부터 가슴이 뛰어서 잠도 안 왔는데, 면회시간이 늦어서 뛰었더니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요.”

얼마 전 생일날에는 딸이 “아빠, 사랑한다.”고 폭풍 문자를 보냈더라. 가족들이 싸움을 오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으면서 웃는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그러더라. 당신이 이 일을 보람 있어 하는 것 같아서 더 말리지 못하겠다고. 그의 아내는 12시간 일을 하고 있다. 하루 8시간만 일하고, 일요일만큼은 쉬고 싶다는 아내에게 그는 늘 미안하단다.



쌍용차 송전탑 농성 현장 (출처: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기나긴 투쟁의 목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더 이상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

“정리해고 했더니 저것들 정말 징글징글하게 포기도 안 하고 싸우더라. 최소한 정리해고를 하려고 할 때 그런 고민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만들자. 그것이 우리 싸움의 목적이자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후에도 정리해고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치열하게 싸우지 못한 잘못이 아닌가,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세월이라고 불러도 될 그 긴 시간들을 보낸 이들은 이제 ‘내 싸움’이 아닌, ‘우리 싸움’을 이야기한다. “이제 승리해서 복직하셔야죠.” 하는 말에 그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먼저 복직되어야하지 않겠느냐고 되묻는다.

“그래도 코오롱이 제일 형이니까.(웃음) 5월에 천막 치면서도 고민한 것이 그거였어요. 쌍차나 재능에서나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천막을 치면서 거점이 분산되면 어떡하지. 가능하면 더 힘들고 어려운 데가 먼저 해결되어야지 싶은 마음들이 먼저 들어요.”



재능교육 지부 농성장 (출처: 참세상)

이미 이것은 코오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리해고를 용인하는 이 사회가 문제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모른척하는 이 정부가, 이 나라가 문제다. 최일배 위원장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단지 ‘대화’를 하기 위해 목숨을 건다. 지금도 이 나라 곳곳에서 굶고, 기어오르고, 목에 밧줄을 걸면서 외친다. 만나 달라고, 대화하자고. 맨 몸의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다. 법도 정치권에서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들이 주판알을 튕기는 동안 지금도 곳곳에서 더 앓을 것도 없는 노동자들이 목숨 하나 내놓고 싸우고 있다. 말라가는 김정우 지부장을 지켜보면서 쌍용차의 고동민 조합원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썩 살이 넘도록 이렇게 어려운 투쟁은 없었다고, 단식투쟁이 제일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싸움을 멈추지 않는 김정우 지부장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의 싸움을 두렵지만 지지해주세요.”

잊지 말아달라고 한다. 아직 우리는 여기서 싸우고 있다고, 우리의 정당한 투쟁들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한다. 지금도 인천의 빈 공장에서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11월 20일 현재 2,120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청광장 건너편 환구단 앞 농성장에서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가 11월 23일로 투쟁 1,800일을 맞는다. 대선을 앞두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들을 찾지만, 또한 대선 정국 속에 그들의 요구는 다시 묻히고 잊혀지고 있다.

조세희 소설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정리해고 금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금지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들을 내놓지 못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들은 이미 거짓말쟁이다. 그것 없이 그들이 말하는 ‘진심’이 희망이 될 수는 없다. 말장난들 속에서 더 많은 이가 죽어가기 전에 지금 그들을 기억하자.

그것이 어느 대통령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들의, 아니 우리의 희망이 될 테니까.

잊지 말자. 아직 거기, 그들이 있다. 

〈장기투쟁 농성장들〉

-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농성장: 대한문 앞
- 쌍용자동차 고공철타농성장: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건너편 송전탑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시청광장 환구단 앞
- 콜트콜텍 농성장: 인천 부평구 갈산동 콜트악기 부평공장(갈산역 1번 출구 앞에서 부평소방서 방향으로 직진 후 부평IC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뒤 오른쪽으로 길을 따라 20m 정도 내려오시면 왼편에 콜트 공장 위치)
-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 농성장: 과천정부종합청사역 4번 출구 앞
- 골든브릿지증권 노동조합 농성장: 충정로 골든브릿지 본사 앞
- 한국쓰리엠 해고자 농성장: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 전북고속버스 노동조합 농성장: 전주 종합경기장 야구장 조명탑 위 (2012.12.12. 잠정 합의로 고공농성 중단)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자 최병승, 천의봉: 울산 명촌 송전탑 위
- 유성기업 해고자 농성장: 충남 아산 유성기업 공장 앞 굴다리 위

구미 불산 가스 유출사태, 무엇이 문제고 얼마나 심각한가?

김수민 (구미시의회의원/ 아이쿱 구미생협 조합원)

2012년 9월 27일 오후 3시 43분, 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4공단)의 (주)휴브글로벌 업체 노동자들이 탱크로리에서 불산을 옮기는 과정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이 회사 직원 4명과 펌프수리 외주업체 1명 등 모두 5명이 사망했다. 추석 연휴 불과 며칠 전에 벌어진 이 사고는 ‘사고’를 넘어 ‘사태’로 명명되었고 이내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급기야 누출된 ‘불산’이라는 물질은 인터넷 주요 검색어로 등극하며 공공의 경계를 받기에 이르렀다.

불산(플루오르화수소산)이란 무엇인가?

불산은 플루오르화수소산이라고도 일컬으며 이는 플루오르화 수소의 수용액이다. 플루오르화 수소(Hydrogen fluoride)는 분자식으로 ‘HF’라고 표현된다. 불산의 구성 원소 중 하나인 플루오린(불소)은 반응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원소와 결합한 화합물로 존재하곤 한다.

플루오르화 수소는 색깔이 없으며 액체 상태에서도 투명하고 냄새가 자극적이다. 물에도 잘 녹지만 섭씨 19.5도 에서도 쉽게 기화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점이 바로 이번에 불산 가스가 누출되어 퍼진 결정적 요인이었다. 불산 자체는 황산, 염산과 같은 강한 산성의 물질은 아니다. 대신 농도가 높아질수록 급속도로 산성이 높아질 뿐이다. 불산은 산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높지 않은 탓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 불화수소가 불소이온(F-)이 되면 세포막을 통과하기 힘들지만, 산성이 강하지 않은 불화수소는 조직에 침투하기가 쉽다.

플루오르화 수소는 유리나 금속 같은 것들을 잘 녹이는 등 강한 부식성을 지니고 있어서 유리의 표면 가공, 전자부품이나 통신장비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에서 널리 쓰인다. 첨단산업과 동떨어진 이미지가 있지만, 쓰임새를 따지자면 첨단산업과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 존재임이 분명하다. 반도체 표면 처리제 등으로도 사용된다는 사실은 최근 직업병 발생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삼성 등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문제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플루오르화 수소는 불소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 들어온 불소는 갑상선이나 동맥, 신장 등에서 고농도로 분포해 있다가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만, 뼈나 치아로 흡수된 불소는 그대로 포함되어 침착되어 버린다. 소량이라면 플루오르화물이 충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 ‘수돗물 불소화’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과도한 플루오르화물은 뼈를 허약하게 만들고 골절의 위험을 높인다.



사고 현장 부근 마을 입구에 선 나무부터 특산물 멜론까지 식물들이 거의 말라죽었다.
불산이 생명체에 끼칠 악영향이 보인다.

기체로 변해버린 불산 가스를 접촉할 경우는 눈, 코, 목 안이 자극되며, 호흡기로 흡입하면 폐렴이나 폐수종, 기관지염, 출혈성 궤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먼 거리에서 저농도로 노출되었으나 그 직후 증상이 없다면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불산 노출에 따른 영향이 그만큼 즉각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농도 또는 근거리 노출은 상당히 위험하며, 저농도 일지라도 불산 가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뼈가 상하고 운동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무대책과 대피 없는 대책에 희생된 주민과 노동자

불산을 다루는 공장은 주거지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산세로 둘러싸인 곳에 건설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사고 공장 바로 지척에 농촌마을인 산동면 봉산리·임천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주민 누구도 그런 사실을 몰랐다.

화학공장 설립 업체는 공장안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5인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는 바람에 2008년 설립 당시 종업원 수가 네 명이었던 (주)휴브글로벌은 여기서 예외가 되었다. 불산이 누출된 탱크로리는 인증을 받지 않은 설비였다. 규제의 시야에서 이 공장이 제외된 탓이었다. 게다가 종업원 3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환경부의 정보 공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불산 원액을 희석시키는 위험강도 높은 공정을 소화하는 (주)휴브글로벌과 같은 업체 말고도 불산을 취급하는 공장은 숱하다.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1,662개의 업체 가운데 10.3%인 172곳이 석유화학 업체고, 그밖에도 숱한 공장에서 불산처럼 위험한 물질을 취급한다. 그러나 어떤 물질을 어디서 다루고 있는지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이후에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단 자본의 압력 앞에 시민의 알 권리는 위태로울 전망이다.

인근 주민들은 소가 침을 흘리는 등의 징후를 통해 단순 화재가 아님을 간파하고 사고 직후 피신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9월 28일 구미시는 환경당국의 ‘안전하다’는 발표를 근거로 주민들을 마을로 되돌려 놓았다. 마을의 말라죽은 농작물들은 ‘여기서 사람이 살기 힘들다’고 웅변하고 있었고, 주민들에게 각종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말이다. 다시 논란이 인 끝에 10월 6일 주민들은 재대피를 결정했고, 10월 7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은 피해지역의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그림 출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환경운동연합 <http://report.safedu.org>)

조사 결과 수질 내 불소농도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농도와 유사하였고, 토양 내 불소농도는 수용성 불소농도만을 분석했기에 별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됐다. 문제는 식물 내 불소농도였다. EU에서 수립한 가축 먹이기준(통상적인 기준: 150ppm, 가장 엄격한 기준 30ppm)을 수백 배 내지 수

십 배 초과하였다. 불소농도는 토양 및 수질에 비해 식물에 안정적으로 잔류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고 당시 불소농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식물에 잔류한 불소농도를 근거로 사고 당시의 공기 중 불산농도를 계산한 결과는 최고 15ppm이었다. 이는 실제 노출시간보다 더 긴 24시간을 노출시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측정된 값이라 할 수 있다. 15ppm은 생명이나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을 끼치는 수치인 30ppm의 절반에 이른다. 반면, 환경부에서 공식 발표하여 구미시가 피해 주민을 마을로 복귀시키는 근거로 쓴 불산 농도는 1ppm이다. 검지관¹을 사용한 간이 측정답게 지금도 부정확하고 부실한 발표였을 공산이 높다.



민주노총이 붙인 펼침막. 누군가 이를 철거하기도 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배태선 사무국장)

1 가스 속에 들어 있는 미량의 성분을 검사하거나 그 양을 재는 데 쓰는 기구. 공기 속의 유독 물질이나 유해 가스를 알아내고 분석하는 데 쓴다.(네이버 사전, 편집자 주)

환경당국이 인근 마을 주민들을 우롱하였다면, 고용노동부와 공단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을 내팽개쳤다. 불산 노출로 인해 그 어느 곳보다 위험해진 공간은 (주)휴브글로벌 곁에 있는 4공단 지역의 업체들이다. 그럼에도 추석 연휴에 하루 이틀 쉰 것 외에 대부분의 공장은 일본 자본이 경영하는 대기업부터, 대기업에 납품하는 수량과 기간을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까지 비정상적으로 정상 가동했다. 휴업한 업체도 있었지만 얼마 가지 못했다.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조치는 건강검진뿐이었다. 휴업 조치 없는 공장에서 일해야만 했던 한 노동자의 증언이다.

사고 지점 300m정도 떨어진 곳에 ○○○○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안의 인력공급업체에서 일한다. 사고 당일 5시께 현장 관리자에게 "우리도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알아본다는 현장 관리자들은 자기들끼리 승용차 타고 사라졌다. 뒤늦게 일하는 아줌마들이 뛰어나가 다른 업체 직원들의 차를 얻어 타고 인근 옥계로 나왔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공포를 느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가니 마스크만 주면서 일하라고 했다. 추석 이후로 몸이 이상해서 오후에 퇴근(반차휴가)하여 순천향병원에서 4시간 기다려 검사받았다. 지금도 몸이 아픈데 어중간하게 아프다. 아예 많이 아프면 차라리 쉬기라도 할 텐데. 직원들 대다수가 어중간하게 아프다. 그래도 밤10시까지 근무한다.

이 사태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근거가 되어야 했을 산업안전보건법은 무력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 상급자에게 보고하면 된다. 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업주는 대피한 직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가해선 안 된다. 노동자에게 주어진 작업 중지에 대한 권리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 해도 관계없다. 노조 존

재 유무와 무관하게 한 명의 노동자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불산 사태 와중에 이 법이 설 자리는 없었다. 민주노동조합의 존재가 부재하며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 4공단이다. 고용노동부도 움직이지 않았다.

보상논란 속 후유증은 언제까지?

10월 22일 민관합동조사단은 본격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10월 31일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의 주민대표와 주민 추천 민간전문가위원은 사퇴를 결단했다. 조사단이 환경청의 의도에 기울어지도록 불투명하게 구성되었고, 사고지역 하천 유출수의 최고 불소농도가 음용수 기준치의 약 3배인 4.7mg/L로 측정되었지만 이 같은 사실이 가법게 취급되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주민대표와 민간위원들이 현장의 참혹함을 알려주는 증거로 꼽은 농산물 및 식생에 대해 환경청이 ‘조속 제거’ 방침을 발표한 것도 비판했다.



수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불산으로 말라죽은 벼.
지역 주민과 농민들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보상 문제도 난항이다. 10월 8일 정부는 사고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피해보상비의 70% 가량을 중앙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또 시민들의 건강검진 비용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보상 규모에 대해 구미시와 주민들의 관점이 다르며, 주민들은 앞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말하지만,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심리가 불안한 이상 이 지역에서 농업행위는 이어질 수 없다.²

본디 봉산리와 임천리는 구미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하는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는 토지보상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4대강 공사에 따른 자금난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곤 한다.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한 데 따른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가 토지를 매입한다면 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 문제가 풀리기 쉽다는 의견이 지역사회에서는 지배적이다. 물론 뒤집어 말하자면, 수자원공사가 나서기 전까지 주민들과 구미시는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뜻도 된다.

<표 1> 봉산 사고 피해 규모(구미시 집계, 2012. 11.18)

계	농작물 피해		가축피해		차량피해		기타피해 (기업피해포함)	
	건수 (농가수)	내역 (ha)	건수 (호수)	내역(두수)	건수	내역	건수	내역
2,144	429	212	141	3,944 (한우 951, 말 8, 염소 230, 닭 588, 거위 4, 개 1,739, 오리 17, 토끼 86, 양봉 321)	1,283	1,962 (개인 184, 기업 1,778)	291	기업피해: 148개사

2 산동면 봉산리·임천리 뿐만 아니라 구미 전 지역의 농민들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나 과장된 소문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구미시의 면적은 서울특별시보다 조금 넓고 사고 지역은 시 가운데서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근거 없이 구미산 농산물 전체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도마에 오른 건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의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이었다. 피해 주민들은 불안감과 분노를 표출했고, 해당 지역구의 시의회 의원들은 피해 주민에게 유리한 수정안을 역설했다. 이것이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상임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관행에 힘입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폭풍이 있었다. 시민의 혈세로 부담할 보상금액인데 피해 주민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노동자 대표가 빠졌다’는 중요한 지적도 있었다. 이 비판에 관한 반론도 있다. 구성상의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 때 가서 수정하면 될 일이며 우선은 피해 주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또 보상기준 액수는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위원회 심사가 보상 규모를 크게 좌우하지 않는데도 과도하게 위원회 구성에 골몰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11월 14일 구미시 도리사에서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사십구제가 열렸다.

남아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의 건강권이다. 실제 증세가 있어서든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든 병원을 찾은 시민이 1만2천여 명을 넘었다. 건강 피해가 사고 이래 한동안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피해를 보았던 주민, 노동자들과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등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와 배려가 절실하다. 민관합동조사단에는 건강역학조사단도 포함되어 있는데, 정부 당국의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달거나, 공단 노동자들을 배제한다거나, 조사의 범위와 기간을 애써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피해주민들은 10월 8일 다시 대피한 이래 지금까지 산동면 환경자원화시설과 해평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생활하는 중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들 앞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차라리 최초의 대피를 한동안 유지하였다면 주민들도 10월 말 발표된 환경오염도 조사를 신뢰하거나 마을로 되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을까.

아직까지 구미시와 환경부는 경솔하게 주민들을 마을로 되돌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을 피해 상황에 노출시키고 공장 가동에만 골몰했던 고용노동부와 자본도 마찬가지다. 

금융 권력에 지친 당신, 떠나자, 협동의 세계로 『화폐전쟁』을 읽고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2007년 6월 출간된 <화폐전쟁>은 중국에서만 100만 부가 넘게 팔리는 대성공을 거뒀다. 미국의 중국계 금융전문가 송홍빙은 이 책에서 18세기 이후 세계사를 바꾼 굵직한 사건들 뒤에 도사린 로스차일드 등 금융재벌의 음모를 폭로했다. 대도무형(大道無形), 즉 형태도 없는 초 슈퍼급 부호들로 이뤄진 국제 금융재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미국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로 보인다. 연방중앙은행 설립에 반대한 9대 해리슨, 12대 테

일러 등 군인 출신의 건장한 두 대통령이 대수롭지 않은 질병으로 사망했다. 1865년 링컨, 1881년 가필드, 1963년 케네디 등 세 대통령은 금융 권력에 반대해 의문으로 가득한 총격으로 피살됐다. 저자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는 금융 권력의 음모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 권력은 일찍이 미국 정부와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해 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금융 권력이 이겼다. 놀라운 사실은 연방준비은행이 한국은행 처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은행이라는 것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권한을 손아귀에 쥐고 세계 경제를 휘두르는 연방준비은행의 속내를 들춰보면 연방도 없고, 준비금도 없고, 은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로스차일드라는 소수의 금융재벌이 주주이고, 연방준비은행은 이들의 이익을 위

해 일한다. 국지전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1차 대전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마련해준 돈으로 수천 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세계전쟁으로 확대되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도 월가의 뒷돈으로 정권을 잡고 전쟁을 준비했다. 하지만 은행가들은 연이은 전쟁으로 횡재를 했다. 화폐를 찍어내는 권한을 가진 연방준비은행 덕택이었다.

세계 제일의 부호인 빌 게이츠의 재산은 500억 달러다. 그러나 형태도 잘 드러나지 않는 로스차일드가의 재산은 어림잡아 50조 달러에 이른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상상조차 가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돈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국제 금융재벌은 누구이며 이들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았을까?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1815년 워털루 전쟁이 벌어지는 당시의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시작한다. 세계의 지배권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일대 격돌을 벌인 전쟁의 포성이 멈추자, 거래소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전쟁의 결과를 알아낸 로스차일드가는 전쟁의 또 다른 승자가 된다. 그 이후 로스차일드가는 세계에서 일어난 중대 사건을 배후에서 좌지우지하는 국제 금융재벌이 된다. 로스차일드와 흡사하게 정보를 독점하고 권력과 결탁한 국제 금융가들은 전쟁과 공황을 거듭하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한다.

저자는 미국의 크고 작은 공황의 원인을 국제 금융재벌의 음모에서 찾는다. 국제금융재벌이 의도적으로 화폐 유통량을 줄여 공황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1837년 공황은 연방중앙은행의 설립을 반대하는 미국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로스차일드가가 만든 것이며 그 후의 공황들 역시 국제 금융 권력이 화폐공급을 줄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1929년 대공황은 금리를 내려 사람들이 앞 다투어 돈을 빌려 투자를 하도록 만든 다음, 갑자기 돈줄을 죄어서 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규모 긴축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귀띔 받았던 극소수의 부자들은 공황의 과정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농경지를 늘린 농민들은 갑자기 오른 금리 때문에 돈을

값지 못해 농지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재벌은 채권 등을 적정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사서 큰 이익을 얻는다. 저자는 이를 양털 깎기라고 부른다.

우리가 겪은 가장 생생한 양털 깎기는 바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이다. 20세기 후반, 경제발전을 통해 착실하게 부를 축적한 아시아 각국에 대해 국제 금융재벌은 작전을 벌인다. 대규모 외화대출을 통해 아시아 각국에 자산 버블을 만들고 난 후, 금융위기를 조장해 단기 차입금을 회수하는 통에 외환 위기가 왔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이 유일하게 양털 깎기에서 살아남았다고, 이는 정부의 과감한 개입과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21세기 세계를 지배할 결정권은 ‘화폐’라고 주장한다. 핵무기보다 더 중요한 화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다가올 ‘피 없는 전쟁’에 대비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국제 금융재벌의 다음 목표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주권국가의 영역에 영토·영해·영공 등 물리적 공간 외에 금융이 추가돼야 한다는 ‘금융 하이 프런티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 ‘금융 하이 프런티어’를 장악하는 자가 결국 화폐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은’을 쥐고 있는 것이 중국이 금융 패권을 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중국의 은본위제와 서방의 금본위제 싸움에서 중국이 패했으며 그동안 값비싼 은을 수출하고 값싼 미국 달러를 대금으로 받은 중국의 과오를 지적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이다.

국제 금융 권력의 엄청난 음모론을 접하면서 독자들은 허무감마저 느끼게 된다. 우리를 둘러싼 일에 대해 스스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무력감이 들기 때문이다. 탐욕스런 금융 권력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자는 솔하게 많은 전란과 경제위기를 통해 서민들이 깨달은 진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자유가 없을 때 정치적 자유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며, 경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민주제도 역시 뿌리를 잃고 돈의 농간에 놀아나는 도구에 불과

하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협동조합의 역할이 있다. 2012년 12월에 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작된다. 협동조합을 만들기가 쉬워지고 협동조합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의 문이 넓어진다. 화살대 하나하나를 쉽게 부러지지만, 화살대가 합쳐 있을 때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크지 않지만 힘이 합쳐지면 큰 힘을 낸다. 협동조합은 개인의 힘을 합치는 참 좋은 방법이다. 🍌

코퍼라티브 유나이티드(The Co-operative United) 참가기

이주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아이쿱생협 대표단 4인(오미예 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신성식 생산법인 경영대표, 김태연 무역팀장, 이주희 대외협력팀원)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영국 맨체스터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코퍼라티브 유나이티드(The Co-operative United) 행사에 참가했다.

총 88개국 734개 협동조합, 그리고 11,800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코퍼라티브 유나이티드는 2012년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마무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2012년 뜻 깊은 해에 영국에서 이 행사가 개최된 이유는 영국이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이 탄생한 협동조합의 발생지이기 때문이다. 10월 마지막 주 일주일동안 3개의 전시(ICA엑스포, 코퍼라티브 리빙, 협동조합 거리), 150개의 워크숍, 10개의 관련회의와 ICA특별총회도 함께 진행됐다. 코퍼라티브 유나이티드는 ICA와 영국 최대의 생협 코퍼라티브 그룹(Co-operative Group)과 영국협동조합연합회인 코퍼라티브 UK(Co-operatives UK)가 함께 주최했다.

10월 31일 첫날 열린 개막식에서는 폴린 그린(Pauline Green) ICA회장을 비롯하여, 찰스 굴드(Charles Gould) ICA사무총장, 렌 워들(Ren Wardle) 코퍼라티브 그룹 회장, 데이비드 버튼(David Button) 코퍼라티브 UK 회장 등의 인사말이 있었다. 폴린 그린 회장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로고와 슬로건으로 전 세계 협동조합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2012년은 우리에게 훌륭한 한 해였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기세를 계속하여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최대의 금융협동조합인 데잘댕(Desjardins)그룹의 CEO 모니크 르루

(Monique Leroux)는 지난달 퀘벡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을 풀린 그린 회장에게 선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선언문은 현재의 취약한 경제 속에서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조합원들과 성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혁신적이고 앞으로 나타날 요구에 유의미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세계 식량의 날(10월 16일) 주제로 '농협-세계를 먹여 살리는 주체'가 된 것을 계기로, 기조연설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호세 그라지아노 다 실바(Jose Graziano da Silva)사무총장이 연설하였는데, 식량안보와 기아문제 해결에 대한 전 세계 농협의 공헌을 높이 사면서 협동조합운동이 노벨평화상 수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ICA특별총회의 주요 의제는 ICA본부 사무실 이전 문제(스위스에서 벨기에로 이전할 때 법 체제 정비), 제7원칙 환경조항 추가의 건(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ICA가 발표한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이었다. 청사진은 지난 1년간 전 세계 협동조합인들의 의견을 모아 풀린 그린 회장을 대표로 하는 실무그룹이 작성하였고, 202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협동조합기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사진 초안은 1)참여(조합원 참여와 거버넌스 변화), 2)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의 구축자로서의 협동조합), 3)정체성(협동조합 메시지 구축과 협동조합 정체성 확보), 4)법 체제(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지하는 법 체제 확립), 5)자본(안정적인 협동조합 자본 확보)으로 한 5가지 주제로, 2020년까지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에서 인정받는 리더로서 협동조합이 자리매김하기 위한 목표가 담겨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ICA엑스포는 협동조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무역교류이며, 35개국의 100여 개 협동조합이 참가했다. 커피, 초콜

릿, 메이플시럽, 캐슈넛, 수공예품 등 물품 외에도 영국의 협동조합 연구 대학 및 교육프로그램, 은행,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 협동조합 부스가 마련되었다. 물품 홍보 부스 중에서도 특히 공정무역품을 소개하는 별도 부스가 가장 활발한 모습이었고, 대부분의 부스는 세계협동조합의 홍보관으로 이용되는 느낌이라 구성 및 내용 면에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ICA가 협동조합 간 무역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만큼 물품 거래 상담 및 계약 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공간을 기획하고, 부스별 전담 담당자 배치와 설명, 보다 풍성한 물품 전시 등 좀 더 충실한 내용을 담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코퍼라티브 리빙(Co-operative living)은 다양한 생활 속예(학교, 주택, 교통, 레스토랑, 펍, 매장 등) 자리 잡고 있는 협동조합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였다. 전시뿐만 아니라 요리 강습을 비롯한 아이스크림 시식회도 함께 진행되어 더 많은 관람객을 끌어 모았다. 협동조합 거리(Co-operation Street)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 협동조합, 장례협동조합, 핸드폰사업협동조합 등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흥미로운 협동조합 전시도 참가자들에게 영국협동조합운동의 다양한 활동, 사업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번 코퍼라티브 유나이티드는 무엇보다 전 세계 협동조합인이 함께 모여 세계협동조합의 해의 성과와 이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끄는 협동조합의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차기 총회는 ICA총회 사상 최초로 아프리카 케이프 타운에서 2013년 11월 개최된다.

***이번 코퍼라티브 유나이티드에서는 본 행사 이외에도 맨체스터 주변의 다양한 협동조합이나 매장을 방문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11월 1일 대표단은 현재 공사 중인 코퍼라티브 그룹 본사와 로치데일공정선거자박물관을 방문했다. 맨체스터 대규모 복합개발프로젝트인 NOMA (North

Manchester)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인 코퍼라티브 그룹(The Co-operative Group)의 15층 높이(지하주차장 포함) 본부 원엔젤스퀘어(One Angel Square)는 2013년 1월부터 총 3,5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할 예정이며, 독특한 모양 때문에 '잘린 달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 빌딩은 유럽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건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채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발전소를 통하여 전기와 난방을 제공한다. 태양열 시스템 등의 천연자원을 사용하여 현재 에너지 사용량의 반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무엇보다 건물 외부의 큰 어스튜브(earth tube) 3개가 공기를 빨아들여 빌딩공기순환, 온도유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독특한 모양으로 건축물로도 감상할 수 있다. 환경적인 면뿐만 아니라, 건설과정에서 지역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 지역건설업체들과의 계약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NOMA프로젝트는 거대한 도심 재생프로젝트로 2029년까지 코퍼라티브 본사뿐만 아니라 상가, 거주시설, 호텔 등이 세워져 맨체스터 지역 활성화를 꾀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단장한 로치데일 박물관을 방문했다. 배고픈 40년대로 불렸던 1844년 28명의 로치데일 지역의 직조공들이 출자하여 31 Toad Lane에 오픈한 매장이 1931년 박물관으로 오픈하였으며, 이번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기점으로 새롭게 개장하여 코퍼라티브 유나이티드에 참여한 많은 협동조합인들이 방문했다. 박물관에는 로치데일공정선 구자조합의 역사, 사진자료 및 현재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어 많은 협동조합인들에게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의지와 신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2012 윤리적 소비 공모전 수기부문 당선작

- 일반 부문 - 억척 짚순이의 '윤리적' 소비 입문기
 - 아름다움을 구매하는 작은 방법
- 청소년부문 - 윤리적 소비 체험 수기

억척 짚순이의 '윤리적' 소비 입문기

김소연

내 별명은 '짚순이'다. 어릴 때부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피아노, 컴퓨터와 같은 굵직한 물건들을 사는 데 재미를 붙였다. 유럽여행은 물론 결혼 준비, 출산 준비에 이르기까지 늘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습관은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 나에게 '윤리적 소비'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다. 비용대비 최고의 효율을 찾는 '합리적 소비'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카트에는 1+1 기획상품, 땡처리 재고 상품, 단위 가격이 제일 싼 물건들이 대부분이었다. 더불어 마일리지 할인카드와 쿠폰도 꼼꼼히 챙겼다. 무조건 싸고 양 많은 것을 찾아 발품을 파는 억척 아줌마의 전형이었다. 그런 내가 '윤리적 소비'를 알게 된 것은 둘째 백일 선물로 받은 신발 한 켤레 때문이었다.

국제 구호단체 월드비전에 정기적 후원을 하고 있는 여동생은 나와는 사뭇 다르다. 합리적인 계산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골드미스이다. 그런 동생은 외식비를 아껴 월 3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었다. 동생의 후원을 받고 있는 꼬마 아이는 후원자를 만나기 전까지 학교가 아닌 커피 농장으로 출근했다고 한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브랜드의 이미지와 분위기에 취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사이, 열 살 어린 아이의 고사리 손은 종일 커피 열매를 따고 있었다. 그리고 받는 하루 대가는 1달러어치의 묵은 밀가루였다. 이것이 가족 다섯명의 일용할 양식이다. 뛰어놀기에도 바쁜 나이에 꿈도 미래도 없이 살기 위해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사연이 안타까워 후원을 시작한 이후 아이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동생의 선물은 아기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를 위한 '탐스' 신발이었다. 다리 수술한 이력도 있고 원체 힘은 못 신는 체질이라 굽 없고 편안한 운동화가 딱 필요했는데 센스 있는 동생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가격이 69,000원이라. "너무 예쁘고 편하긴 한데 캔버스화 치고는 좀 비싸다"며 바람을 넣었다. 그

러자 이름조차 생소했던 ‘탐스’ 신발에 대해 알려 주었다.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아이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1:1 기부 공식에 대입한 것이라고 했다. 한 켤레를 구입할 때마다 똑같이 한 켤레가 맨발의 어린이들에게 신발로 기증된다고 했다. 이미 젊은 층과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는 심플한 캔버스 이미지의 편안한 착용감으로 인기가 높는데 나만 뒷북이었던 것이다.

싼 값에 많은 양을 쇼핑한 하루는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지구 반대편 누군가는 그싼 값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착취된 노동력의 대부분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은 내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졌다. 불합리한 현실과 권력층의 횡포에 화가 났고 그들의 희생에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당장 떨어지는 잔돈푼의 이익을 포기하기란 좀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 날부터 ‘짠순이’ 억척아줌마가 좀 더 부담 없이 ‘윤리적 소비’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의 장점인 알뜰함에 ‘윤리적’인 소비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먼저 ‘윤리적 소비’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여 선택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선택에는 환경과 인권, 공동체 등의 도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물건을 고를 때 가격과 품질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만드는 과정 가운데 부당한 강요와 억압으로 인한 노동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유해물질이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동식물이 불필요하게 희생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본다. 제품의 유통 경로를 탐색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탐색하며 보다 능동적인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아하! 이제야 비로소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윤리적 소비’란 바로 ‘책임질 수 있는 소비’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찾은 ‘윤리적 소비’의 첫 번째 방법은 ‘아름다운 가게’를 비롯한 중고 시장의 적극적인 활용이었다. 30개월인 큰 아이와 백일이 갓 지난 두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에게 안성맞춤이었다.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 뒤에는 아이 한명 키우는데 드는 돈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부모들의 한숨이 서려 있다. 임신이라는 기쁨도 잠시, 천차만별의 가격대를 자랑하는 출산용

품에 허를 내두르게 된다. 하나뿐인 내 자식에게 내 돈으로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엄마들의 욕심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그러나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200만 원대의 유모차를 사달라고 졸랐을 리 없다. 한글도 깨치지 못한 꼬마가 유명 수입브랜드의 티셔츠만을 고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런 소비 흐름의 주동자는 엄마, 즉 소비자 본인의 허영과 자기만족을 위한 것일 뿐이다. 남들이 알아주는 브랜드를 입고 사용함으로 체면을 세우는 사이 소비의 주체는 ‘나’가 아닌 ‘남’이 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의식에 갇혀 아이를 키우다보니 한숨만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시작한 ‘윤리적 소비’의 첫 출발은 둘째 아이의 바운서였다. 친구네 큰 딸이 쓴 것을 우리 큰 딸이 이어 받은 중고품이다. 다시 친구네 둘째가 그리고 석 달 전 다시 우리 둘째 까지 네 명이 신나게 돌려쓰고도 아직까지 멀쩡하다. 두 집 모두 셋째 계획은 없기에 아마도 다음 달이면 ‘아름다운 가게’의 기부천사 날개를 달게 될 것 같다. 단돈 2만 원에 구입한 중고 아기 침대를 시작으로 카시트, 쏘서, 보행기, 동화책 전집 등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가게’에서 만난 인연으로 아이의 방이 채워지고 있다. 처음에는 남이 쓰던 것을 물려준다는 게 미안했다. 그리고 조금 찝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철만 지났을 뿐인 양호한 상태의 물건을 저렴한 값에 들어오는 재미에 빠지다 보니 돈과 더불어 공간까지 절약되어 좋았다.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수많은 자원과 이동 경로, 환경을 파괴하는 갖가지 유해 작업들과 공정들 그리고 포장, 유통과 관련된 물건의 탄생과 종말에 이르는 삶을 추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과잉 생산된 물건 공화국에 살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쌓여 가는 아이들 장난감과 책, 물건들 속에서 어느새 창고처럼 변해버린 아이 방에 정리할 엄두를 못 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엄마의 욕심으로 채운 방 안에 있는 철 지난 전집과 장난감들로 스트레스까지 쌓여간다면 가까운 중고 시장에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 떨어지는 잔돈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윤리적 소비’의 뿌듯함이 마음 속 깊이 남게 될 것이다. 남이 사니까 나도 따라 사고, 남이 있는데 없으면 불안한 마음. 그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은 소비에 종속되는 것

이다. 상대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소비의 주체로서 올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윤리적’ 소비의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주체가 환경과 인권, 공동체, 지역까지 생각하는 책임 있는 소비의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윤리적 소비’는 더 이상 어려운 발걸음이 아닐 것이다.

‘아름다운 가게’를 이용하며 절약된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두 번째 ‘윤리적 소비’를 시작했다. 바로 제3세계 아이들의 정기적 후원이었다. 중고 시장을 통한 단순한 절약을 넘어 강대국 기업의 횡포에 착취당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돕고 싶었다. 생계를 이어갈 대안이 노동뿐인 제3세계의 아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대기업의 유통 경로에서 오는 부당한 이윤에 희생되지 않도록 작은 후원을 통해 그들이 노동현장이 아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후원금을 모았다. 그래서 만나게 된 일곱 살 티샤의 손에는 이제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고철이 아닌 예쁜 색연필이 쥐어져 있다. 티샤가 학교 공부를 통해 노동의 신성함과 진정성을 알게 되고 꿈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멀다. 환경과 사회, 인권, 공정무역 모두 그 뜻과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빠듯한 살림을 꾸려 나가는 가정주부들에게 가격 비교는 순간순간 유혹이 된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개념과 인식의 변화를 적극 홍보해 개인의 소비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기업의 참여로까지 이끌 필요가 있다. 그렇게 형성된 기업의 이미지는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각인이 돼 윈윈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무역의 뜻을 이해하고 나선다면 공정무역 제품들의 가격이 보다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정 무역 상품에 대한 다양한 아이템 개발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한 때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억척 ‘짠순이’의 장보기는 시작된다. 치솟는 물가와 얇은 지갑은 여전히지만 언제나 잊지 않는 것이 있다. 소비의 주체는 ‘나’이고 작은 ‘나’가 모여 지갑의 두툼함보다도 더 든든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름다움을 구매하는 작은 방법 -금 귀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최선인

“우와, 예쁘다”

주변을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골목길 맞은편, 오늘 아주머니와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고로 저렇게 반갑게 인사를 건넨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리둥절하다.



뮤리얼 아주머니와 알게 된지도 벌써 2개월. 어느 날 아침 골목길, 영어 단어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걸어가는 동양인 소녀가 신기하고 측은하셨던지, 그날 이후부터 이 흑인아주머니는 나의 든든한 케이프타운 엄마이자 첫 현지인 친구가 되어 주셨다.

언제나 아주머니는 아프리카의 따뜻한 햇살 같은 얼굴로 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셨다.

“안녕, 반갑구나,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어제는 왜 안 왔니? 오늘은 어땠

어?” 등등.

짧으면 짧고, 길면 길수도 있는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일주일에 적어도 두 세 번은 만났으니 함께 나는 인사말만 해도 20번은 넘었는데... 그런데도 오늘 받은 인사말은 아주머니께 처음 듣는 말이라 은근히 낯설다.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곤 멧쩍은 마음에 괜스레 머리를 긁적이며 수줍음 반, 놀라운 반으로 여쭙는다.

“저요? 저 말이에요??”

아주머니의 커다란 눈망울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럼 이 골목에 우리 아가씨 말고 다른 분이 또 있나? 오늘따라 유난히 예뻐 보이네. 특히 그 귀여운 곰돌이 귀걸이.”

콧 찍어 ‘곰돌이 귀걸이’를 말씀하시자, 문득 ‘아. 귀걸이를 했었지.’ 생각이 났다. 내 귀를 절대 스스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두 눈이 최대한 귀 쪽을 향한다. 역시나 귀가 보이지 않으니 괜히 무안해서 손으로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아, 이거요? 제가 아끼는 귀걸이라서 하고 있어요. 선물 받은 거라 맨날 끼고 있었는데요?”

“그렇구나. 오늘 처음 봤어. 너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 곰돌이, 금인가보다.”

“네, 제가 아프리카 간다고 하니까 오랫동안 못 보겠다고 아는 분이 선물 해주셨어요.”

예쁜 액세서리를 마주할 때 나타나는 여자들의 표정을 유심히 본 사람은 알지도 모른다. 유난히 마음에 드는 귀걸이를 발견했을 때 보이는 두 가지 반응. 반짝이는 큐빅처럼 얼굴에 예쁜 미소가 피어오르거나, 너무나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 체념하는 표정.

한국에서 가끔 쇼핑할 때 볼 수 있던 친구들의 표정을 가만히 떠올려보니, 지금 유리얼 아주머니 얼굴에도 그 두 가지의 의미가 뒤섞여 있는 건 아닌지

싶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처음 보는, 절대 잊히지 않는 아주머니의 묘한 표정이 마음에 걸린다.

“그렇구나. 예쁘네. 그런데 나는 금 귀걸이는 안 해, 못해...”

‘응? 지금까지 예쁘다고 하시고선... 귀 뚫는 게 무서우신 건가? 귀걸이 알레르기가 있으신 걸까? 아니면 금이 너무 비싼 걸까?’ 한국에서 귀걸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했던 다양한 이유들을 떠올려 보았다.

“왜요?? 왜 못 하세요, 아주머니??”

왜 못하는데? 안하는데? 또래 친구에게 말하듯 그냥 궁금한 마음에 물어본 질문. 당연히 예상한 답들이 튀어나올 줄 알았다. 귀에 매달린 귀여운 곰돌이를 바라보던 아주머니의 눈빛이 내 눈동자를 바라본다.

“이렇게 아름다운 금 귀걸이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아프고 다쳤는지 알고 있으니까...”

심장 한 칸이 뺨 뚫린 것 같았다. 그리곤 남아공에 오기 전 봤던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가 떠올랐다. 내가 가게 될 아프리카가 나온다는 것은 물론, 90년대 소녀들의 영원한 로망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온다기에 무조건 찾아갔던 영화관.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내 마음 한 쪽에 남은 건 케이프타운도, 디카프리오도 아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프리카의 광산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잘려버린 까만 손이었다. 아주머니의 예상치 못한 답변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받은 내 사랑스런 곰돌이 귀걸이가 갑자기 블러드 다이아몬드와 겹쳐진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귀걸이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던 귀가 괜히 간지럽고 시렵다.

“정말요? 그래서 정말 금 귀걸이는 안하시는 거예요?”

정말 모기만한 목소리가 나와 여쭙봤다. 누군가 이야기를 했으니 그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여쭙본 건지, 아주머니께서 정말 귀걸이를 하지 않

으시는지 궁금해서였는지 아님 정말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내용이 사실인 건지... 질문은 하나였지만 아마 그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던 것 같다.



“응. 금은 물론, 은이나 다이아몬드도 하지 않아. 물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어찌면 너마저도 우리 흑인들은 가난하고 못살아서 보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사실이야. 안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경우가 많지. 금 귀걸이, 다이아몬드 반지, 우리에겐 평생 일해도 손에 넣을 수 없는 가격의 것들이지. 알아... 그런데 단지 비싸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나는 너무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 조그마한 귀걸이와 반지에는 단지 보석만 들어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에게는 그 보석보다 더 반짝이고 소중한 가족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 아프리카사람들의 눈물과 아픔도 들어있어. 보석은 단지 예쁘고 비싼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우리에게 보여 지는 것보다...”

아무리 사실을 다룬 영화라도 우리가 직접 겪지 않은 내용을 담은 영화라면 현실은 하나의 이미지로 전락하기 쉽다.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를 보고 우리는 국제사회가 다이아몬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원산지 추적 감

시체제인 킴벌리 프로세스를 만들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직접 보진 않았고 현실과의 거리도 멀게 느껴지기에 우리는 공정무역을 설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열광한다.

하지만 영화보다 현실이 가까운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르다. 빛나는 보석을 얻기 위해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보석과 관련된 인권유린과 밀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것을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환상을 팔기위해, 자신들의 삶을 보석에 팔 수 밖에 없는 지독한 현실이 반복되는 아프리카의 단면.

아프리카 땅에서, 아프리카 사람에게, 블러드 다이아몬드와 보석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분명 한국에서 책과 영화로 접한 공정무역과는 느낌이 다르다.金を 채취하는 동안 수은에 중독되어 살이 녹아버린 자극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아도 담담하게 우리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힘들고 아프다고 말해주는 흑인. 피부색이나 언어와 문화는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 등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서 같다. 다이아몬드를 캐는 사람도, 보석을 사는 사람도 반지에 담긴 아름다운 사랑을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며,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족이고, 친구이다.

그래서인지 아주 순수하고 단순하게 궁금한 질문이 생겼다.

“그런데요 솔직히 예쁘긴 하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도, 제 귀걸이도요. 그러면 아예 아무 것도 안 해요? 예쁜 것도 하기 싫으세요? 그래도 진짜 가끔씩은 꾸미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은 날,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가끔씩은...”

갑자기 단순해진 질문에 아주머니의 웃음보가 빵 터졌다.

“ㅋㅋㅋ. 당연히 나도 예쁜 거 좋아하지! 금 귀걸이를 하지 않는다곤 했지만 너의 곰돌이 귀걸이는 여전히 사랑스럽구나. 네가 아프리카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 여성들도 꾸미는 거 엄청 좋아하는단다. 예쁘고 싶다는 건 나 같은 흑인뿐만 아니라, 너와 같은 동양인, 그리고 전 세계 여성들의 공통관심사겠지? 물론 너의 곰돌이 금 귀걸이도 귀엽고,

타이타닉에 나온 파란 다이아몬드도 매력적이지만 사람이 꼭 값비싼 보석으로만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생김새, 피부색만큼 다양할 수 있단다.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아프리카 여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방법이 하나 있지.”

갑자기 팔목을 내미시는 아주머니. 까만 팔목에는 남아공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무지개처럼 알록달록 각각의 색깔들이 모여 만들어진 화려한 비즈 팔지가 채워져 있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흑인들의 눈물과 피가 담긴 보석보다는 누군가의 어머니 또는 딸로써 정성과 사랑을 담아 한 구슬, 두 구슬 엮어 만든 비즈 공에 물건을 더 좋아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랬다. 휘황찬란한 다이아몬드, 금 목걸이, 명품 하나 걸치지 않았어도 남아공 길거리에서 만난 아프리카 여인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케이프타운의 햇살처럼 밝은 사람들의 환한 미소 때문이기도 했지만 웬만한 귀금속 귀걸이, 목걸이, 반지 세트 못지않게 반짝이며 조화를 이루는 비즈액세서리 덕분인 것도 같았다.



흙과 물을 반죽해서 빚은 비즈를 정성스레 화덕에 구워, 구슬마다 자연의 색깔을 입히면 완성되는 비즈.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는 아프리카 여인들의 정성스런 손길이 담겨있다. 비즈공예는 아프리카의 전통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최근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아프리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현지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고 그들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는 활동들을 지원

하는 몇몇 서구의 단체들은 비즈공예를 공정무역의 아이টে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뮤리얼 아주머니도 내 곰돌이 귀걸이가 귀엽다고 하셨듯이 보석은 누가 뭐래도 눈부시고 아름답긴 하다. 하지만 이젠 단지 광고 속 매력적인 연예인들과 함께 나오는 귀금속만이 예뻐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석이라고 해서 모두 블러드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은 아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힘든 노동을 하는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어 공정하게 생산되고 유통하는 보석도 있다. 직접 아프리카에 갈 수는 없더라도 소비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구매한 보석이 지구별 반대편 흑인 아이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보다 쉽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공정한 방식으로 생산 유통된 반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관련 상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소비자로서 회사에 부당한 과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면세점의 보석을 사기보다 우리가 방문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만들고 애용하고 사랑하는 물건을 사는 것도 아름다움을 나누는 작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아공에서는 그 곳의 흙과 물과 자연이 담긴 비즈 목걸이, 인도의 다람살라에서는 티벳 난민들의 독립염원이 담긴 비즈 팔지, 이집트의 어느 골목 가판대에서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숨결이 담긴 비즈 귀걸이를 구매하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미소를 나누는 것.

나와 지구별 친구들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길은 꼭 수백만 원의 거액이 들어야만 시작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어쩌면 똑같은 인간으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각자가 가진 아름다운 미소와 예쁜 액세서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작은 구매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남아공에서 가져온 비즈팔지를 보며 작지만 아름다웠던 아주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려본다. 

-사진출처-

Lisa Kristine (<http://www.lisakristine.com/modern-day-slavery/>)

The Fair Trader (<http://www.thefairtraderchicago.com>)

SOMO beads (<http://www.somobeads.com/>)

African Conflict Diamond

(http://adsoftheworld.com/forum/exhibition/african_conflict_diamonds)

한진관광 (<http://blog.naver.com/ekaltour?Redirect=Log&logNo=150136665533>)

윤리적 소비 체험 수기

김서희 (진명여자고등학교)

윤리적 소비를 처음 접한 것은 아주 어릴 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토피가 아주 심했고, 부모님은 이 때문에 시골로 이사할 지를 고민하실 정도였어요. 친환경 먹을거리로 음식 조절을 하면 아토피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모님은 생협 조합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조합원과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생협 행사에 자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농촌 나들이인데요, 다른 생협 조합원 가족들과 함께 원주에서 오리입식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오빠는 오리를 안고 신이 나서 눈에 뛰어든 반면에 푸드득거리는 날개에 겁을 먹고 발만 동동 굴렀던 것이 생각납니다. 오리는 논에서 자라면서 해충들을 모조리 잡아먹어 병충해를 막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벼가 잘 자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가을에는 고구마를 캐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빠와 누가 더 고구마를 많이 캐나 내기도 하고 생전 처음으로 메뚜기도 잡아 보았어요. 농약을 많이 치는 논밭에서는 메뚜기를 보기 힘든데,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고구마밭이어서 그랬는지 메뚜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빠와 함께 유리병에 가득 메뚜기를 모았습니다. 메뚜기볶음이 술안주로는 그만이라고 어른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잡은 메뚜기들을 어떻게 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때는 윤리적 소비가 어떤 것이고, 공정 무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어릴 적의 경험이 지금의 제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건강하고 자연 친화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더 자라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어서는 친환경 농법 체험과는 조금 다른 윤리적 소비를 경험했습니다. 역사 기행을 하는 한 사회적 기업을 알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운영하는 또래기행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유적지를 돌며 설명을 듣고, 역사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 회사의 수익금이 공부방 아이들의 역사 공부를 위해 쓰인다고 하니 무엇보다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공부방 아이들에게 역사 수업을 하는 것이 보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강사 선생님들의 말씀이 깊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매 주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 장난도 많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 사회적 기업이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그 혜택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테니까요.

해마다 5월 첫 째 주 토요일에는 공정 무역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작년 저는 친구와 함께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공정 무역의 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공정무역과 관련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사회적 기업들이 각자 부스를 설치하고 여러 이벤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커피를 시음하는 곳, 아프리카 특징을 캐릭터화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곳, 대학생들이 전통놀이를 하는 곳, 제3세계 여성들이 만든 옷을 파는 곳, 무거운 짐을 메고 히말라야 트래킹을 돕는 포터 사진전시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 등이 있었습니다.

이 날 공정무역의 날 행사를 통해 어렵פות이 알고 있던 공정무역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무역은 제3세계 생산자들을 착취하는 다국적 기업과는 달리 생산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생산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등의 공정함을 지켜주는 무역입니다. 특히 제3세계 여성이 만든 옷마다 생산자 표시가 되어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들이 윤리 의식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윤리적 소비와 관련되었던 경험을 정리해보면서 다시금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먹을거리를 사먹음으로써 소비자들의 건강 뿐 아니라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사회적 기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회적 기업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면 저소득 빈곤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지요. 공정 무역이 널리 퍼지면 국내를 넘어 제3세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윤리적 소비가 늘어날수록 세계는 평화롭고, 평등해 집니다. 이제부터는 저 개인의 윤리적 소비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윤리적 소비를 권장하고 홍보해야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시장 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큰 오늘날, 협동조합이 이상으로 삼아온 ‘서로 함께 돕는’, ‘호혜’의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협동의 사회시스템으로서 지금의 협동조합운동을 더욱 널리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이은선 옮김 (2012)
그물코 | 184쪽 | 신국판 | 10,000원

출판사 서평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경쟁사회 속에서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라는 이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열어간 선구자들이 있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는 크고 작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협동조합이라는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입니다.

평생 협동조합 교육과 홍보 일을 해 온 지은이 와카츠키 타케유키는 협동조합의 불씨를 지핀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조합과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로 일컫는 독일의 라이파이젠, 일본 에도시대 말기 상호부조의 이념으로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자 했던 니노미야 손토쿠와 오하라 유가쿠 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역사를 짚어 나갑니다.

일본의 크고 작은 협동조합들이 ‘서로 돕는 호혜’의 이상을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지은이가 직접 가보고 협동조합 사람들을 인터뷰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협동의 이념을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으로 펼치고, 환경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으로 담아내는 협동조합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스템은 협동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동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협동조합은 ‘상호부조(호혜)’의 가치로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업체이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조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함을 지은이는 강조합니다.

협동조합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쏟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협동조합에 관한 책 가운데 실용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책은 역사 속에서 협동조합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였는지를 조직의 구조로 접근하면서, 실제 협동조합을 운영할 때 겪게 되는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주로 조직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한다.

에드가 파넬 저, 염찬희 옮김 (2012)
그물코 | 352쪽 | 153 x 224 | 9,000원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노동자, 도시 빈민, 지역 주민 등이 스스로가 필요하여 생협과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주적으로 운영해 온 역사를 정리하는 시도 중 하나이다

김형미 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012)
푸른나무 | 352쪽 | 신국판 | 15,000원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1879년 일본 최초의 생협 교리초소사로부터 일본 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한 권으로 읽다

사이토 요시아키 저, 다나카 히로시 옮김 (2012)
그물코 | 220쪽 | 신국판 | 12,000원

생산기반을 지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수매선수금 운동

조합원이 이용할 물품대금을 물품이용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매선수금 운동은 본인이 이용할 물품대금을 미리 냄으로써 조합원 모두가 이용할 물품의 생산, 수매에 필요한 자금(영농, 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수매선수금 운동을 하는 이유

1. 안정적인 물품 공급을 위해서는 생협의 계약생산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확보를 위해 수매자금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2. 생협과 계약생산지 간의 생산계약과 계약금 우선 지급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약 100~130억 원이, 가을철 주작곡류의 수매를 위해서는 약 1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3. 아이쿱생협 조합원 중 1만 명의 조합원이 내는 수매선수금 운동을 통해 생산자와의 생산계약과 영농지원에 필요한 자금 및 가을철 수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참여방법

1. 100만 원 정액 참여방식
 - ① 참여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② 1회 100만 원씩 횟수 제한없이 참여합니다.
2. 월 이용금액 참여방식
 - ① 매월 이용금액을 선수금으로 납입(조합원 월 평균 이용금액: 약 20~30만 원)
 - ② 최소금액은 10만 원 이상으로 약정하여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할 때 자본형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1. 온라인 : 장보기 로그인 후 참여신청
2. 매장 : 매장에 비치된 참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참여신청

문의: 1577-0014 인터넷 : <http://www.icoop.or.kr/coopmall>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CO-OPERATIVES JOURNAL vol.9 Winter 2012

The Journal of the iCOOP KOREA Cooperative Institute

Financing, Korean Consumer Co-operatives' Challenge:

Cooperatives and 'the Capital'

KIM, Soo-haeng

Financial Model for Cooperatives

CHO, Hye-kyung

The Problem of Financing in Cooperatives

CHEONG, Won-gak

Desjardins, Canada Credit Union, funds Cooperatives financing

CHANG, Jong-ik

Round-table :

Some cooperators in the field talk about real difficulties of financing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함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2호

TEL 02) 2060-1373 FAX 02) 2060-1374

E-Mail icoop-institute@hanmail.net

www.icoop.re.kr

재생종이로 만든 책

